

朝鮮中期의 醫療制度

—醫療制度의 變遷과 醫書의 編纂·刊行 및 對外交流를 中心으로—*

孫 弘 烈

清州大

The Medical System of the Mid-Yi Dynasty : Changes in the Medical Systems, Publication of Medical Books, and Foreign Exchanges

SOHN Hong Yul

Chong Ju University

ABSTRACT

The early Yi Dynasty was the period in which the medical sciences and systems were most developed in the history of medical science in Korea. After King Yönsa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edical science had been almost hal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science of the Ming Dynasty, which made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gradually obsolete. To make it worse, Imchin 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Pyöngchahoran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36) deprived Korea of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re had been some noticeable development in medical science. For example :

1. *Tongüi pogam* was written by Hô Chun, and many able medical doctors were produced by the efforts of the King Chungchong and King Sôncho who showe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2. Imchin waeran g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Japanese medical scien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ing medical science played a catalytic role in advancing the level of the Korean medical science.

3. The woman-doctor system was newly introduced to take care of women's disease exclusively.

4. The mid-Yi Dynasty exerted more efforts to advance the medical science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the medical developments of the early Yi Dynasty.

* 이 論文을 위한 연구는 1991년도 韓國學術振興財團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았음.

I. 序 言

韓國醫學은 朝鮮前期에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世宗에서 成宗에 이르는 약 70년 간에는 醫療機構의 改編·整備는 물론 醫書의 編纂과 刊行·鄉藥의 普及·醫員과 醫女의 養成 등 制度的·學問的·技術的 수준이 크게 向上되어 韓國醫學史上 金字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燕山君 이후로는 이러한 醫學의 學問的 業績을 계승하지 못하였고, 制度面에서도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壬辰倭亂으로 朝鮮은 政治·經濟·社會 등 각 분야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醫學도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다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許浚에 의해 편찬된 「東醫寶鑑」은 韓國醫學이 前期醫學의 명맥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 업적이었다.

이후 景宗代까지는 活人署의 廢圮와 復活, 醫職의 新設 등 制度的 變遷도 있었고, 醫女의 機能變化 및 醫書의 編纂·諺譯·刊行 등 괄목할 만한 업적도 있었다. 그러나 前期에 크게 발달했던 鄉藥의 衰退과 中期 이후 朝鮮醫學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明醫學의 盛行은 韓國醫學의 自主的 發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朝鮮의 醫學發達에 기여한 바도 크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朝鮮中期의 醫學 및 醫療制度和 醫·藥의 對外交流 등을 고찰함으로써, 朝鮮中期 醫學이 韓國醫學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歷史的 意義를 究明해 보고자 한다.

II. 醫療制度的 變遷

1. 醫女制度的 變化

1) 醫女制度的 新設

醫女制度는 朝鮮初期에 처음 설치된 것이다. 아직까지 없었던 이 制度가 생기게 된 이유는 朱子學의 영향으로 男女의 구별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해져서, 良家의 女子들이 男醫에게 진찰받기를 꺼려하여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太宗 6년(1406) 3월 濟生院 知事 許衡의 건의로 醫女制度를 신설하고 濟生院에서 童女에게 醫術을 가르침으로써, 醫女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¹⁾

처음 醫女로서 教育을 받은 자는 京內 倉庫와 官司의 官婢들이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다. 그것은 太宗 18년(1418) 濟生院에서 醫女의 수를 늘려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보아,²⁾ 이를 짐작할 수 있다. 世宗은 醫女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教育을 강화하였으나, 醫女가 모두 京中各司의 官婢들이어서 成才한 뒤에도 이들의 활동무대가 주로 京中이었기 때문에 外方의 부녀는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世宗은 許衡의 건의에 따라 同 5년(1423)부터는 界首官의 官婢 중에서 총명한 자를 女妓의 選上例에 의해 뽑아올리게 하여 教育을 시킨 다음 本處에 보내 醫療業務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이다.³⁾

1) 「太宗實錄」, 卷11 6年 3月 丙午條.

2) 上揭書, 卷35 18年 6月 庚子條: “加置醫女 禮曹據濟生院呈上言 醫女共七名成才者五名 諸處分遣每不足焉 乞以各司婢子內年十三歲以下者十名 可定何如 從之”.

3) 「世宗實錄」, 卷22 5年 11月 乙巳條 및 同 12月 辛亥條.

이러한 醫女의 선발과 敎育은 世宗代에 制度로서 확립되었고, 世祖 때에는 醫女의 勸懲法까지 만들어져 이들에 대한 敎育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 그리고 成宗 9년(1478)에는 醫女에 대한 勸課條目이 다시 마련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첫째, 藝文館員 및 有名文臣 2명으로 敎授를 겸임시켜 교대로 敎育할 것.

둘째, 醫女의 所讀書를 「直指脉」, 「銅人經」, 「加減十三方」, 「和劑方」, 「婦人門」, 「產書」로 할 것.

셋째, 醫女는 3等級으로 나누는데, 1은 內醫 2명으로 매월 料米를 지급하고, 2는 看病醫 20명으로 그중 前月講書에 점수를 많이 받은 자 4명에게는 料米를 지급하며, 3은 初學醫로 한다.

넷째, 提調는 매월 上旬에는 點穴을 가르친다. 그리고 歲抄 때 醫司提調가 方書·診脈·命藥·點穴의 1년 점수를 通考하여 陞降을 결정하는데, 그중 不通함이 많은 자는 奉足을 奪하되 初年에는 1명, 次年에는 2명을 奪하고 3년에는 本役에 遷送한다.

다섯째, 初學醫는 看病하는 일은 시키지 말고 學業에 전념케 한다.

여섯째, 나이가 40이 되도록 一方에도 통하지 못하고 또 다른 技藝마저 없는 자는 本役에 遷送한다.

일곱째, 매년各司에서 官婢 1명씩을 간택하여 醫女의 수를 보충한다.⁵⁾

고 하여 世祖代 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醫女를 內醫·看病醫·初學醫 등 3等級으로 나누어 學問의 成就도와 能力에 따라 업무를 분담시킨 것은 이제 醫女制度가 정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敎育內容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脉經」과 「針灸法」이 교수되었고, 世宗 때에 調劑法과 「產書」가 추가되었는데,⁶⁾ 成宗代에 이르러 科目이 더 늘어나 醫師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敎育한 醫書는 대개가 기초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된 醫員으로서 활동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醫女는 '醫師'로서 보다는 看病醫나 醫員의 補助者, 또는 産婆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醫女는 醫術을 인정받아 매달 料米를 지급 받던 惠民署 소속의 內醫와 宮中の 內侍醫女, 각 의료기관과 출신지에서 醫員을 보좌하면서 鍼灸를 施術하고 看病에 종사하던 看病醫——대부분의 醫女가 看病醫였을 것이다——그리고 학습단계에 있던 初學醫 등 3종의 醫女가 있었으나, 이외에 産婆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産婆가 곧 醫女는 아니지만, 醫女制度가 창설된 이후 이들에게는 診脈과 鍼灸 이외에 産科와 婦人科에 대한 敎育을 특별히 시켰고, 그중에서 診脈이나 鍼灸보다 出産의 技法에 숙달한 자를 택하여 分娩의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産婆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⁷⁾ 그리고 이후 이러한 出産의 技法을 전승하여 전적으로 이 일에만 종사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産婆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産婆가 직업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醫女制度의 성립 이후로서 이 제도의 설치는 '醫師' 혹은 '看病人'으로서의 醫女 뿐만 아니라 '産婆'라는 새로운 여성직업인을 탄생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도 産婆의 기능을 인정하여 매년 歲抄 때 가장 성과가 많은 産婆 1명에게 料米를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⁸⁾ 이와같이

4) 「世祖實錄」, 卷30 9年 5月 庚戌條.

5) 「成宗實錄」, 卷89 9年 2月 己酉條.

6)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p. 238 參照.

7) 金斗鍾, 「近世朝鮮의 醫女制度에 관한 研究」, 「亞細亞女性研究」1號(1962), 10.

8)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勵條에 「醫員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叙用 産

醫女는 專門醫療人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게 되었으나 이들이 모두 京鄕各司의 官婢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社會的 活動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봉사를 통한 사회참여는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2) 醫女의 機能變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醫女는 內醫(內侍醫女)·看病醫·初學醫·產婆 등으로 구분되어 말은바 직무에 종사하는 기능인으로서 활동하였으나, 燕山君代에 이르러 점차 醫療人으로서 뿐만 아니라 妓女로서 宴會에 참석하는 자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醫女의 사회활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荒淫을 일삼던 燕山君이 宴會에 醫女를 妓女와 함께 참석시켰기 때문에 궁중 연회는 물론各司의 公備宴飲과 本司⁹⁾ 및 京邸 등에서 宴會에 醫女와 妓女를 招致하여 폐해가 많으니 이를 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¹⁰⁾ 燕山君 8년(1502) 이전부터 醫女가 妓女와 함께 酒宴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燕山君은 신하에게는 이를 금하면서 자신은 宴會에 醫女를 80명이나 妓女와 함께 참석시킨 바 있으며,¹¹⁾ 同 10년(1504) 11월에는 大妃殿의 進宴時에 나이 어린 醫女 50인을 化粧시켜 시중들게 하는 것을 常式으로 삼게 하였고,¹²⁾ 이듬해 9월에는 나이 21세에서 30세까지의 姿色이 있고 醫業에 정통하며 病이 없으면서 남의 妾이 아닌 醫女 50명을 禮曹와 典醫監·惠民署 提調 및 內醫院 堂上이 뽑아 올리도록 하는 등¹³⁾ 醫女를 妓女와 함께 宴會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醫女는 本然의 임무인 醫業에만 종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社會的 地位가 賤流인 妓女와 同一視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醫女가 妓女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그 직업이 천해서가 아니라 醫女와 妓女가 모두 賤民出身이었던 데다가 燕山君 때에는 醫女와 妓女가 동일시되어 '醫妓'라 호칭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內醫院(內局·藥房)의 醫女를 "藥房妓生"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¹⁴⁾ 특히 燕山君은 揀擇된 醫女가 文字를 해독해도 음악(歌舞)을 모르면 내쫓도록 한 것으로 보아,¹⁵⁾ 醫女를 妓女 취급함으로써 鮮初부터 醫女를 양성하려 했던 근본 취지를 망쳐버리게 되었고, 이에 中宗 이후 상당기간 동안(적어도 宣祖代까지) 醫女는 妓女와 같이 酒宴에 참석하게 되어 스스로 品位를 실추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도 醫女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燕山君이 축출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中宗은 5년(1510) 2월 官員의 宴會에 醫女와 娼妓를 부르는 것을 엄금하게 하고, 司憲府로 하여금 그 節目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으며,

婆則給料"라 하여 독립된 직업인으로서 產婆가 成宗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9) 本司는 三醫司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0) 「燕山君日記」, 卷42 8年 正月 辛丑條에 "詳定廳堂上成俊來啓…(中略)…京中各司 公備宴飲 或於本司 或於京邸 醫女·女妓招致 因此各司奴婢疲弊 今後 如此冒法官吏 令憲府嚴禁 勿論公議罷黜"이라 하여 위반자는 파면하도록 건의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

11) 上揭書, 卷54 10年 6月 壬申條.

12) 上揭書, 卷56 10年 11月 庚寅條: "傳曰 大妃殿進宴時 擇年少醫女五十人靚粧以供執御 自今以爲常".

13) 上揭書, 卷59 11年 9月 辛亥條에 "傳曰 女醫年二十一至三十歲 有姿色 所業精通無病 不爲人家畜者五十人 禮曹同典醫監·惠民署提調·內醫院堂上 揀擇以啓"라 하였음.

14) 李能和, 「朝鮮解語花史」(東洋書院, 1927), p. 33.

15) 「燕山君日記」, 卷56 10年 12月 戊寅條: "傳曰 揀擇醫女 雖學字而不學樂 棄之可也".

이를 위반하면 “制書有違律”로서 처벌하되 醫女와 娼妓도 함께 重罰에 처하게 하였다.¹⁶⁾ 그러나 燕山君代에 무너진 醫女의 紀綱을 한 번의 王命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中宗 11년(1516)에도 朝官의 술자리에 醫女와 妓女의 참석을 금지시킨 바 있다.¹⁷⁾ 이렇게 女樂을 금지시키자 일부 士大夫의 宴會에서는 醫女만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어 禮曹로 하여금 檢察케 하기도 하였으며,¹⁸⁾ 그후에도 官員과 惡少輩가 일부 醫女와 어울려 기강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¹⁹⁾

이렇게 醫女를 妓女와 같이 대하는弊習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 明宗 때에도 宗親들이 醫女와 縱淫을恣行하여 이를 엄히 다스리게 하였고, 宣祖 33년(1600)에는 內醫女 愛鍾의 淫行이 크게 문제되어 醫籍을 박탈하기도 하였으며,²¹⁾ 同 38년(1605) 4월에는 惠民署 提調 鄭昌衍과 宋言愼이, “醫女들이 宴會에 불러다니 가르칠 겨를이 없다”²²⁾고 할 정도로 기강이 문란해지고 사치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醫女의 妓女待遇나 그들의 失行에 대한 記事가 『實錄』에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醫女의 酒宴參席은 상당한 제약을 받아 妓女로서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치료와 看病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었지만, 한번 흐려진 醫女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신분 때문에 內醫院 醫女를 “藥房妓生”이라 하는 등²³⁾ 조선 후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의녀의 임무는 婦人의 질병을 치료하고 醫員을 보좌하여 看病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朝鮮時代의 醫女는 이외에 여러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즉 부상당한 士族婦女의 상처를 조사하기도 하고²⁴⁾ 燕山君 8년(1502)에는 婚事이 있는 士大夫의 집에 書吏와 함께 가서 禮物를 조사하도록 하였는데,²⁵⁾ 이는 뒤에 法으로 정해져서 醫女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²⁶⁾ 또한 燕山君은 각지에서 뽑아올린 妓女와 나이 어리고 똑똑한 婢女 및 良女에게 글과 음악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글과 詩는 醫女에게 맡겨 가르치게 하였다.²⁷⁾ 宮中行事に 醫女가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즉 죽은 宮人의 祭文을 한글로 번역하여 읽기도 하였고,²⁸⁾ 光海君 12년(1620)에는 親蠶時 儀仗隊로 동원할 妓女가 부족하여 醫女를 강습시켜 130명이나 儀仗隊로 활용한 바 있으며,²⁹⁾ 同 15년 3월에도 內殿의 上壽宴에 隊伍妓生이 부족하여 醫女

16) 「中宗實錄」, 卷10 5年 2月 丁亥條: “傳曰 今後大小人員宴會 招致醫女及娼妓者 痛禁 令憲府 磨鍊節目以啓 憲府請以制書有違律論斷 醫女·娼妓并重論 上曰可”.

17) 上揭書, 卷26 11年 11月 辛卯條.

18) 上揭書, 卷29 12年 8月 戊辰條.

19) 上揭書, 卷61 23年 8月 丁巳條, 同 卷67 25年 正月 戊戌條, 同 卷80 30年 10月 癸卯條 및 丙午條 등.

20) 「明宗實錄」, 卷30 19年 5月 戊子條.

21) 「宣祖實錄」, 卷126 33年 6月 辛丑 및 丙申條.

22) 上揭書, 卷186 38年 4月 甲寅條.

23) 註 14) 參照.

24) 「成宗實錄」, 卷246 21年 10月 辛酉條.

25) 「燕山君日記」, 卷44 8年 5月 己亥條 및 同 6월 戊申條.

26) 「大典後續錄」, 卷3 禮典 禁制條.

27) 「燕山君日記」, 卷56 10年 12月 丁巳 및 辛酉條.

28) 上揭書, 卷59 11年 9月 丙申條: “傳曰 今卒宮人祭文 以諺文翻譯 令醫女讀之”.

29) 「光海君日記」, 卷150 12年 3月 庚寅·甲午條.

44명을 동원하는 등³⁰⁾ 醫女는 官婢의 교육은 물론 妓女와 함께 宮中行事에 儀仗隊로도 활동하였는데, 그것은 醫女와 妓女가 官婢出身이어서 同類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王室의 結婚行事인 朝見儀節과 同牢宴儀節에도 글을 아는 醫女를 교육시켜 이를 맡게 하였는데, 이것은 中宗 12년(1517) 7월 이후에는 宮內的 行事이기 때문에 外人을 시키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³¹⁾

醫女의 중요한 임무로 또 罪人의 搜捕가 있었다. 즉 燕山君 때에는 年老한 醫女가 죄인의 검거를 담당한 바 있었으며,³²⁾ 中宗 때에는 醫女가 捕盜將과 함께 士族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본래 醫女를 설치한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를 금하도록 건의한 적도 있으나,³³⁾ 光海君 6년(1614)에는 臨海君이 감추어 둔 妓女를 醫女를 시켜 체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³⁴⁾ 醫女의 이러한 죄인 수포는 그 임무 중의 하나였으며, 女人에게 賜藥을 내릴 때 이를 운반하기도 하였는데,³⁵⁾ 이것은 罪人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醫女는 그 임무가 본래 治療와 看病이었지만 이외에 여러가지 임무를 부여받아 賤民出身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존재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3) 醫女의 社會的 地位

太宗 6년(1406) 醫女를 처음 양성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수가 매우 적어서, 同 18년 濟生院의 醫女는 모두 7명이었고, 그중 成才者는 5명 뿐이었다.³⁶⁾ 그후 의녀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教育도 강화되었으며, 능력에 따라 社會的·經濟的 處遇도 改善되었다.³⁷⁾ 世宗 때부터는 地方에서도 女妓의 選上例에 의해 醫女를 뽑아 올리게 함으로써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매 3년마다 70人を 選上하였으나,³⁸⁾ 뒤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選上하도록 함으로써³⁹⁾ 惠民署의 醫女는 항상 70명을 유지하였다.

醫女 중 가장 우수한 자는 內醫院에 속해 있던 內局醫女(內醫女·內醫)였는데, 이들도 처음에는 內醫院이 아니라 惠民署에 2명이 속해 있으면서 宮中에 출입하였던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렇게 치료에 능한 자가 적어서 成宗 19년(1488)에는 醫術에 능해 궁중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3명 뿐이니 더 적어 올리도록 한 바 있으며,⁴¹⁾ 이 때문에 뒤에는 醫女 중 나이 어리고 총명하여 교육할 만한 자 15명을 간택하여 教授와 訓導로 하여금 엄히 교육시켜 현저하게 효과가 있는

30) 「光海君日記」, 卷187 15年 3月 丙戌條.

31) 「中宗實錄」, 卷28 12年 7月 甲申條: 「禮曹佐郎尹溪啓曰 朝見及同牢宴儀節 常敎解文女醫 使習之 但內則非外人所可入也 若自內爲之事則 亦可自內習之也 傳曰可」.

32) 「燕山君日記」, 卷59 11年 8月 己巳條.

33) 「中宗實錄」, 卷56 21年 2月 戊辰·壬申條.

34) 「光海君日記」, 卷80 6年 7月 丁丑條.

35) 「中宗實錄」, 卷74 28年 5月 乙丑條.

36) 「太宗實錄」, 卷35 18年 6月 庚子條.

37) 孫弘烈, 前掲書, pp. 234-241參照.

38) 「經國大典」, 卷3 禮典 選上條.

39) 「續大典」, 卷3 禮典 選上條.

40) 「成宗實錄」, 卷89 9年 2月 己酉條.

41) 上掲書, 卷220 19年 9月 戊寅條.

자를 內醫院에 入屬시킴으로써 內局醫女가 탄생하게 되었다.⁴²⁾ 이렇게 內醫院에 醫女가 배속된 것은 中宗 때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위의 기사가 中宗 38년(1543)에 편찬된 『大典後續錄』에 처음 보이는 것으로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內醫院의 醫女는 뒤에 12명으로 정해졌는데, 이들은 매달 2·6일에 入直하는 官員이 「銅人經」이나 「纂圖(脈)」으로 考講하여 한 달에 滿6分 이상 받는 자는 料를 지급하고, 또 內醫院 提調가 매달 한번 診脈이나 點穴로 시험을 치루어 首席을 한 자에게는 綿布 2匹을, 次席에게는 1匹씩을 지급하여 장려하도록 하였다. 또 惠民署 女醫 70명 중 나이 어리고 총명한 자를 뽑아 「銅人經」이나 「纂圖脈」을 매달 3번(10, 20, 30日) 考講하는데, 1·2次는 3任官이 모여서 행하고, 3次는 提調와 合講하여 점수를 많이 받은 자 4명에게 賞을 주었는데, 3명에게는 料를, 1명에게는 布를 지급하였으며, 內局醫女에 결원이 있으면 이들 중에서 임명하였다.⁴³⁾

이와같이 醫女制度는 鮮初에 창설된 이래 정비를 거듭하여 中期 이후에는 制度로서 확립되어 婦人의 질병치료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들 女醫의 社會的 待遇는 어떠하였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은 모두가 京鄕各地의 官婢들이었기 때문에 成才하여 醫女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반 官婢와는 달리 料米을 지급받고 復戶되었으며, 兩班의 첩이 되는 경우 그 소생은 良人이 되는 등 일반 賤民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즉 世宗은 濟生院의 醫女들이 매일 醫書를 공부하고, 看病과 針灸로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妓女의 예에 의해 1년에 두 번 米穀을 지급하도록 하였고,⁴⁴⁾ 文宗 元年(1451) 4월부터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 출신 醫女가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있었으므로, 女妓의 예에 따라 米1石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⁴⁵⁾ 이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공부만 하고 있던 初學醫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中宗은 醫術을 중히 여겨 醫女에게 주던 給料로 全遞兒와 半遞兒가 있었는데, 그중 全遞兒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醫術이 뛰어난 內醫女 大長今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다.⁴⁶⁾ 이외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 王·王妃의 치료에 큰 효과가 있거나, 護産의 공으로 賞賜되는 경우도 많아⁴⁷⁾ 女醫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醫女는 典醫監·司譯院·觀象監·惠民署·律學·算學의 官員·生徒 및 女妓 등과 함께 復戶되었으며,⁴⁸⁾ 宗親과 功臣 및 大小官員이 집안에 데리고 살면서 밖에 나다니지 않는 女醫와 妓女(家畜者)의 소생은 良人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⁴⁹⁾ 家畜者의 한계가 不分明하다 하여 論難이 있기도 하였으나,⁵⁰⁾ 이후

42) 「大典後續錄」, 卷3 禮典 獎勸條: 「醫女年少教誨可當十五人揀擇 令教授·訓導嚴加訓誨 顯有成效者 內醫院入屬 令本院官員醫術精通者別定教誨 講所讀方書 不能曉解者并訓官論罰」.

43) 「大典通編」, 卷3 禮典 獎勸條.

44) 「世宗實錄」, 卷65 16年 7月 庚子條.

45) 「文宗實錄」, 卷7 元年 4月 庚辰條.

46) 「中宗實錄」, 卷52 19年 12月 乙巳條: 「傳曰…(中略)…且醫女料食 有全遞兒 有半遞兒 今者全遞兒有寡闕 而不啓其應受之者 必以自下啓之爲難也 但醫女大長今 醫術稍優於其類 故方出入大內而看病焉 此全遞兒其授長今」이라 하여 大長今에게 全遞兒를 지급하게 하였다.

47) 「世宗實錄」, 卷52 13年 5月 己巳條, 「中宗實錄」, 卷102 39年 2月 戊寅條, 「明宗實錄」, 卷3 元年 正月 戊辰條 및 同 卷11 6年 6月 辛酉條 등.

48) 「大典後續錄」, 卷4 兵典 復戶條.

49) 「經國大典」, 卷5 刑典 賤妻妾子女條.

50) 「中宗實錄」, 卷3 2年 7月 壬子條.

法으로 정하여 그 소생은 良人이 되었던 것이다.⁵¹⁾

이와같이 醫女는 비록 출신이 천한 官婢였지만, 兩班의 妾이 되면 그 소생이 良人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아 公役을 갖지 않았던 일반천민과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특히 優待되던 京中女妓⁵²⁾와 같은 복장을 할 수 있었고,⁵³⁾ 더욱이 內醫院 醫女는 검은색의 족도리를 써서 黑布를 쓰던 일반의녀와 그 지위가 다름을 표시하였으며,⁵⁴⁾ 뒤에는 양반의 부녀와 같이 紗羅綾段을 입을 수 있을 만큼⁵⁵⁾ 사회적 지위가 어느정도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 출신 醫女가 上京 후에 같은 천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소생은 출신지의 官衙로 보내짐으로써⁵⁶⁾ 대부분의 醫女와 그 소생의 신분은 천민으로 남았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의녀는 賤民이었지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良人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內醫院의 醫女나 醫術에 뛰어난 사람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2. 其他官署의 醫官

1) 治腫廳의 置廢

治腫廳은 瘡腫과 여러 惡瘡을 전문으로 치료하던 機關이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것은 「增補文獻備考」에

治腫廳은 本朝 宣祖 36년(1603) 다시 設置하였는데, 그 初置年 및 革罷年代는 알 수 없다. 종기의 치료를 관장하였는데 후에 典醫監에 合併하였으며, 敎授 1員(典醫監의 敎授를 移屬한 것임)·鍼醫 3員·前衛 10員·生徒 10인이 있었다⁵⁷⁾

는 기사 뿐이다. 이것은 宣祖 36년에 다시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전에 설치되었다가 廢置되었음이 분명한데, 처음 설치한 것이 언제인가는 알 수 없다. 다만 「經國大典」에

醫員으로서 비록 方書를 解得하지는 못하지만 능히 부스럼(瘡腫) 및 여러가지 惡疾을 치료하여 効驗을 본 일이 가장 많은 자 1인을 年末에 王에게 보고하여 任用한다⁵⁸⁾

고 한 것으로 보아 成宗代에 이미 瘡腫과 惡疾治療에 남다른 지식과 능력을 가진 醫員이 있어 이를 발탁, 專門醫로 양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治腫廳이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中宗 38년(1543)에 편찬된 「大典後續錄」에 治腫醫員 1명이 西班牙遞兒職을 받은 것으

51) 「大典後續錄」, 卷5 刑典 賤妾子女條 및 「續大典」, 卷5 刑典 賤妾子女條.

52) 精神文化研究院編, 「譯註經國大典」註釋篇 (1986), p. 500 女妓 參照.

53) 「大典續錄」, 卷5 刑典 禁制條.

54) 李能和, 前掲書, p. 35 醫女服飾 參照.

55) 「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條.

56) 「受敎輯錄」, 卷5 刑典 公賤條 및 「續大典」, 卷5 刑典 公賤條.

57) 「增補文獻備考」, 卷223 職官考10 典醫監附治腫廳條.

58)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勵條.

로 보아,⁵⁹⁾ 成宗代 歲抄 때 1명씩 錄用하던 治腫醫員을 中宗代에는 制度的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治腫廳과 같은 상설기구가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후 언젠가 廢置되었다가 壬辰倭亂 후 外科學의 발달로 이것의 필요를 느껴 宣祖 36년 復設되었을 것이다. 이때 復設된 治腫廳의 教授는 처음에는 典醫監의 教授를 임명하였으나, 뒤에는 治腫教授가 別設되었다.

이 治腫教授는 正職은 아니었지만 仕日이 만료되면 東班의 六品正職을 제수받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仁祖 때의 吏曹判書 崔鳴吉 등이 上疏하여 仕滿 후 軍職六品에 敍用하되 능력을 보아 임용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전대로 시행하게 하였다.⁶⁰⁾ 그런데 肅宗 27년(1701) 吏曹判書 李崱의 劄子에 의하면, 治腫教授·吏文學官·觀象監教授 등이 仕滿 60個月에 東班 六品正職으로 陞遷할 때는 반드시 考講한 연후에 敍用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⁶¹⁾ 뒤에는 다시 東班職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治腫廳이 別設(典醫監에 附設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될 수 있었던 것은 鮮初부터 鍼灸醫·瘰癧醫 등 外科專門醫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鍼灸專門醫는 世宗朝부터 별도로 敍用하였고, 成宗 3년(1472)에는 鍼灸專門法을 別設하여 四孟朔 取才에 이들을 선발하였던 것이다. 또 瘰癧醫(연주창 전문의)도 濟生院에 속해 있으면서 치료를 담당하였는데, 뒤에 濟生院이 惠民局에 合屬하였을 때 前銜權知와 瘰癧醫權知가 69명이나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⁶²⁾ 이미 專門醫로서의 瘰癧醫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鮮初부터 鍼灸醫와 瘰癧醫가 外科專門醫로서 있었기 때문에 中宗代에 治腫廳이 설치될 수 있었고, 여기에 鍼醫와 前銜醫員 10명 그리고 (治腫)生徒 10명이 속해 있으면서 敎育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治腫廳의 別設은 당시 腫氣를 치료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것은 任彦國의 「治腫秘方」과 같은 治腫專門書가 明宗 14년(1559)에 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任彦國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成宗代末(1490年代)~明宗代初(1540年代)의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井邑人으로 靈隱寺의 老僧에게서 醫術을 배워 母親의 병을 치료한 이후 수만명의 병을 치료하여 禮賓寺 主簿에 特敍되었으나 그 기술을 다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全羅道 觀察使 安瑋가 그 遺方을 얻어 錦山郡守 李億祥에게 부탁하여 간행한 것이 日本에 전하고 있다. 이외에 역시 日本에 전하는 것으로서 任彦國의 저서라 여겨지는 「治腫指南」 2권은 腫氣의 外科의 手術과 外用藥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新技法을 창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⁶³⁾

이러한 새로운 外科醫學의 발달이 治腫廳과 같은 독립된 치료기관을 신설하게 하였을 것이나 뒤에 廢置되었고, 宣祖 36년 復設된 것은 壬辰倭亂으로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부상자의 속출로 外科學이 발달하여 專門醫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였을 것이다. 이 治腫廳이 언제 典醫監에 合屬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肅宗代에도 治腫教授가 別設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治腫廳이 설치되어 있던 기간은 前後 합해 적어도 100년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9) 「大典後續錄」, 卷4 兵典 遞兒條.

60) 「仁祖實錄」, 卷28 11年 7月 壬寅條.

61) 「肅宗實錄」, 卷35上 27年 正月 辛亥條.

62) 孫弘烈, 前掲書, pp. 218-221 參照.

63) 森木榮, 「朝鮮醫書誌」(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p. 77-81, 「治腫秘方」 및 「治腫指南」 參照.

2) 三醫司 및 其他官府의 醫官

三醫司(內醫院·典醫監·惠民署)의 주요직제는 朝鮮末期까지 큰 변동이 없으나 燕山君 및 英·正祖代에 副正·敎授·直長·奉事 등 일부 관직의 변동이 있었다. 즉 燕山君은 末년에 荒淫에 빠져 各官署의 관직을 革除하였는데, 그중 醫職으로는 內醫院의 直長(3)·奉事(2)·副奉事(2) 각 1명과 典醫監의 副正(1)·直長(2)·奉事(2) 각 1명, 그리고 惠民署의 參奉(4) 2명 등을 革除하였다.⁶⁴⁾ 그러나 이때의 減員은 中宗反正 이후 일부는 복구되었으며, 英祖 때 다시 약간의 변동이 있는 후 正祖代에 재조정하여 朝鮮末期까지 그 定員이 유지되었다. 成宗 이후 이러한 醫職의 변천을 圖表로 표시하면 表1~3과 같다.

〈表 1〉 內醫院

成宗 16年 (經國大典)	燕山君 12年 (아래 減員된 것은 中宗 反正 이후 곧 복구된듯 함)	英祖 22年 (續大典)	正祖 9年 (大典通編)
正 1(正 3 品) 食正 1(從 4 品) 判官 1(從 5 品) 主簿 1(從 6 品) 直長 3(從 7 品) 奉事 2(從 8 品) 副奉事 2(正 9 品) 參奉 1(從 9 品)	減 1(2) 減 1(1) 減 1(1)	左(成宗 16 年) 同 減 2(1) 左(成宗 16 年) 同	左 同 復舊2(3) 左 同

〈表 2〉 典醫監

成宗 16年 (經國大典)	燕山君 12年 (中宗反正 이후 곧 복구된듯 함)	英祖 22年 (續大典)	正祖 9年 (大典通編)
正 1(正 3 品) 副正 1(從 3 品) 食正 1(從 4 品) 判官 1(從 5 品) 主簿 1(從 6 品) 醫學敎授 2(從 6 品) 直長 2(從 7 品) 奉事 2(從 8 品) 副奉事 4(正 9 品) 醫學訓導 1(正 9 品) 參奉 5(從 9 品)	減 1(0) 減 1(1) 減 1(1)	減 1(0) 減 1(1) 減 2(0) 減 1(1) 減 2(2) 減 3(2)	副正 1(복구) 直長 2(복구)

64) 「燕山君日記」, 卷61 12年 正月 丙申條, ()안의 숫자는 「經國大典」에 있는 員數임.

〈表 3〉 惠民署·活人署

惠民署			活人署	
成宗	燕山君(아래 減員 된 것은 中宗反正 이후 곧 복구된 듯 함)	英祖	成宗	英祖
主簿 1(從 6 品)			別提 4(從 6 品)	減 2(2)
醫學教授 1(從 7 品)		減 1(0)		
直長 1(從 7 品)				
奉事 1(從 8 品)				
醫學訓導 1(正 9 品)				
參奉 4(從 9 品)	減 2(2)	參奉 4(복구)	參奉 2(從 9 品)	參奉 2

表1~3⁶⁵⁾에 의해 보면 「經國大典」이 완성된 이후는 鮮初와 같은 醫職의 변동이 없이 朝鮮末期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⁶⁾

이렇게 醫職의 변동은 별로 없었으나,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은 국가의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어 醫司를 廢하거나 일부는 統合시키기도 하였다. 즉 宣祖 34년(1601)에는 戰亂으로 政府內各官의 遞兒職을 일부 감하도록 건의함으로써 三醫司의 것도 감해졌으나,⁶⁷⁾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光海君 2년(1610)에는 各官府에 藥房이 있고 惠民署의 藥材調達에 어려움이 있으니 惠民署를 宜惠廳藥房이라 改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兩醫司(典醫監과 惠民署)를 革罷할 것을 논의하도록 하였다.⁶⁸⁾ 그러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丙子胡亂 직후인 仁祖 15년(1637) 惠民署를 典醫監에 合屬하였지만 곧 復設되었다.⁶⁹⁾ 또 活人署는 壬亂 후 廢圯되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는데, 光海君 4년(1612) 司憲府에서 都城內外 병자의 치료를 위해 復設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復活하는 등 변화를 겪었다.

특히 惠民署와 活人署는 民疾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구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官吏의 不正 때문에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는 의문되는 바가 많다.⁷⁰⁾ 한편 燕山君代에 新設된 醫職으로 司活이 있다. 이것은 燕山君이 同 10년(1504) 12월 疾病家를 위해 醫術에 精通한 典醫監과 惠民署의 醫員 4명을 선정하여 司活이란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비롯되었다.⁷¹⁾ 이어 同 12년 6월에는 新設된 司活을 掖庭署에 속하게 하고 遞兒職을 除授하도록 하였으며, 疾病家를 避調家라 칭하게 하는 등⁷²⁾ 民疾治療에 관심을 보이기도

65) 위의 表 1~3은 「經國大典」, 「燕山君日記」 卷61 12年 正月 丙申條,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66) 鮮初 醫職의 變遷은 孫弘烈, 前掲書, pp.170-189의 表 1~3 및 濟生院과 活人署 參照.

67) 「宣祖實錄」, 卷136 34年 4月 戊寅條.

68) 「光海君日記」, 卷36 2年 12月 辛巳條.

69) 「仁祖實錄」, 卷34 15年 3月 丁未條.

70) 「肅宗實錄」, 卷32下 24年 12月 庚戌條 및 同 卷62 44年 11月 丙戌條.

71) 「燕山君日記」, 卷60 10年 12月 己酉條: “傳曰 疾病家擇定 惠民署·典醫監精通醫術者四員 以司活爲號”.

72) 上掲書, 卷62 12年 6月 癸亥條 및 辛未條.

하였으나, 司活이라는 醫職이 다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中宗反正 이후 司活은 廢置된 것으로 생각된다.

醫司 이외의 各官에도 藥房이 설치되어 醫員이 배속되어 있었다. 본래는 議政府·六曹·宗親府·忠勳府·都摠府 등의 藥房에 醫員이 2~3명씩 배속되어 있었으나, 耆老所와 中樞府에도 藥房이 설치되었고⁷³⁾, 敦寧府에도 설치되어 政府內 各官府에 醫員이 增置되었다.⁷⁴⁾ 京城의 5部에도 世宗代부터 月令醫가 파견되어 民疾을 치료하였으나,⁷⁵⁾ 燕山君 9년(1503) 2월 議政府에서 5部에 醫員을 配定하여 民疾을 치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燕山君代에는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듯하다.⁷⁶⁾ 그런데 中宗 34년(1539)에 5部에 醫員 3명씩(15명)을 정하여 民疾을 치료하고, 活人成績을 참고하여 褒貶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⁷⁷⁾ 이때 와서 5部醫員制(月令醫制)가 정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도 兩大戰亂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軍醫는 이미 鮮初부터 各급 軍部隊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병자와 부상병을 치료하였으며, 특히 水營과 浦口에 海道醫員을 파견, 常駐하면서 水軍을 치료케 하는 등 일찍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⁷⁸⁾ 따라서 그 후에도 軍醫는 訓練場과 사냥처는 물론 각 兵營에 배속되어 있었다. 즉 習陳時에는 醫員이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常例가 되어 있었으며, 騎射時에도 의원이 곁을 떠나지 말고 대기하도록 하였다.⁷⁹⁾ 또 사냥할 때는 대장이 있는 곳에 醫員 2명을 고정배치하였고, 射獸將이 있는 곳과 墜馬者를 위해 醫員 1명을 別定하고 있다.⁸⁰⁾

이렇게 訓練場이나 狩獵場에도 의원이 배치되어 軍醫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三軍門에도 軍醫가 속해 있었는데,⁸¹⁾ 그 구체적 내용은 表 4와 같다.⁸²⁾

〈表 4〉 三軍營 軍醫

訓練都監	御營廳	禁衛營
藥房(醫) 1人 鍼醫 1人 馬醫 1人	藥房(醫) 1人 鍼醫 1人	藥房(醫) 1人 鍼醫 1人 馬醫 1人(禁軍廳馬醫兼察)

이와같이 中央에는 각 軍門에 軍醫가 속해 있었으며, 地方에는 節度使營에 속해 있는 審藥과 各道の 監營·大都護府·都護府·牧·郡·縣의 醫生이 “有病軍士”의 치료를 담당함으로써 軍醫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73) 「大典通編」, 卷4 兵典 醫員條.

74) 「中宗實錄」, 卷60 22年 12月 癸丑條.

75) 「世宗實錄」, 卷81 20年 5月 丙午條.

76) 「燕山君日記」, 卷48 9年 2月 庚子條.

77) 「中宗實錄」, 卷91 34年 8月 丁卯條.

78) 孫弘烈, 前掲書, pp.191-193 參照.

79) 「中宗實錄」, 卷44 17年 3月 癸亥條.

80) 上掲書, 卷46 17年 11月 丙午條.

81) 「大典通編」, 卷4 兵典 救恤條: “三軍門置藥房 鍼·藥各一 救療有病軍卒”.

82) 「新敎受敎輯錄」, 兵典 京官職 訓練都監·御營廳·禁衛營條.

3. 醫官의 試取

醫科도 다른 雜科와 같이 初試와 覆試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는데, 시험방법과 합격자에게 수여한 品階는 前·後期가 같았지만, 시험과목은 각각 달랐다. 이를 「經國大典」과 「續大典」을 비교하여 보면 <表 5>와 같다.

<表 5> 醫員科擧

	試 驗 科 目
經國大典	「纂圖脉」·「銅人經」(以上 誦)·「直指方」·「得効方」·「婦人大典」·「瘡疹集」·「胎產集要」·「救急方」·「和劑方」(和劑指南일 경우는 誦)·「本草」·「經國大典」(以上 臨文) (11科目)
續大典	「纂圖脈」·「銅人經」(背誦)·「直指方」·「本草」·「經國大典」·「素問」·「醫學正傳」·「東垣十書」(以上臨文) (8科目) (나머지 諸書는 廢한다)

위 表의 科目을 비교해 보면, 「纂圖脈」·「銅人經」·「直指方」·「本草」·「經國大典」 등 5科目은 변동이 없으나, 後期에는 前期의 「得効方」·「婦人大全」·「瘡疹集」·「胎產集要」·「救急方」·「和劑方」(和劑指南) 등 6科目이 빠지고, 그대신 「素問」·「醫學正傳」·「東垣十書」 등 3科目이 대치되어 8科目으로 시험을 치루었다. 그런데 前期에서 빠진 6科目 중 3科目(「得効方」·「婦人大全」·「和劑方」)은 中國醫書이고, 나머지 3科目(「瘡疹集」·「胎產集要」·「救急方」)은 朝鮮醫書인데, 뒤에 대치된 3科目은 모두 中國醫書로서 결국 後期에는 科目 모두(「經國大典」은 제외)가 中國醫書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朝鮮前期에 自主的 발전의 기초를 확립하였던 朝鮮醫學이 후기에는 中國醫學에 밀려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婦人科의 科目이 빠진 것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醫女를 계속 양성하였기 때문에 醫科나 取才에서 그 중요성이 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편 醫員과 鍼灸醫의 取才科目도 前·後期가 달랐는데 이를 보면 表6·7과 같다.

<表 6> 醫員取才

	試驗科目
經國大典	「纂圖脈」·「銅人經」(誦·단 나이 50이 넘는 자는 背講)·「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効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以上 臨文)
續大典	「纂圖脈」·「銅人經」(背誦)·「直指方」·「本草」·「素問」·「東垣十書」·「醫學正傳」(以上 臨文) (나머지 諸書는 廢한다)

〈表 7〉 鍼灸醫取才

	試 驗 科 目
經國大典	「纂圖脈」·「和劑指南」·「銅人經」(以上 誦)·「直指脈」·「針經指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鍼經摘英集」(以上 臨文)
續大典	「纂圖脈」·「銅人經」(背誦)·「直指方」·「本草」·「素問」·「東垣十書」·「醫學正傳」(以上 臨文)(나머지 諸書는 廢한다. 단 素問을 背誦하는 자는 점수를 倍를 준다)

위 〈表 6〉을 〈表 7〉과 비교해 볼 때 醫員取才의 경우 전기에는 「資生經」·「十四經發揮」 등 針灸書가 들어 있었는데, 후기에는 모두 제외되고 醫員의 科擧科目과 일치하고 있으며(經國大典은 제외), 더구나 針灸醫의 경우에는 기초적 診脈書 이외에는 대부분이 針灸書였는데, 그것도 醫員의 取才科目과 일치시킴으로써, 科擧·取才·鍼灸醫取才 등 모든 醫員의 선발을 同一科目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선발방법은 一見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科擧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고, 取才는 1년에 4회 있는 四孟朔의 시험이며, 鍼灸醫는 外科專門醫인데, 이 3者を 같은 科目으로 시험한 것은 醫員選拔方法의 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試取方法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醫生과 審藥은 국가의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다. 醫生은 의학을 공부하는 生徒였지만, 醫員을 보좌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특히 地方醫生은 공부 이외에 藥材의 採取와 輸送·民疾의 救療 등 여러가지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成才者가 많지 않았지만,⁸³⁾ 이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되었고, 中央醫司의 生徒定員은 후기에 증원되어, 典醫監은 56명(50), 惠民署는 62명(30)이 되었는데,⁸⁴⁾ 惠民書의 경우 이렇게 醫生이 倍加된 것은 醫療施惠의 폭을 넓히려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생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地方醫療에 있어서 醫生과 함께 중요한 존재는 審藥이었다. 審藥은 이미 高麗時代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宮中에 헌납할 藥材의 採取와 이를 심사·감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방민 구호에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審藥은 從9品으로 京畿에 1명·忠淸道에 2명·慶尙道에 3명·全羅道에 3명·黃海道에 1명·江原道에 1명·永安道(咸鏡道)에 3명·平安道에 2명 등 모두 16명이었는데,⁸⁵⁾ 후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즉 京畿는 廢置되고, 黃海道에는 1명이 加置되어 2명이 되었으며, 平安道는 2명 중 1명을 減하고, 나머지 지방은 그대로 둠으로써 모두 15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增減된 이유는 알 수 없다.

醫學은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의술에 정통한 자는 內醫院에 入屬시키거나 東班에 敍用하였으며, 능력이 없는 자는 充軍하는 등⁸⁶⁾ 褒貶을 가하였다. 즉 宣祖 때의 鍼醫 林春茂는 林川郡守·仁川府使·富平府使를 역임하

83) 孫弘烈, 前掲書, pp. 214-215 參照.

84) 「大典通編」, 卷3 禮典 生徒條.

85) 孫弘烈, 前掲書, pp. 274-275 參照.

86) 「中宗實錄」, 卷46 18年 正月 己酉條 및 同 卷12 5年 9月 丁丑條.

였고,⁸⁷⁾ 御醫 陽平君 許浚은 崇祿大夫(從1品)에 올랐으며,⁸⁸⁾ 이외에도 많은 醫官이 의술로 인하여 堂上官의 品階를 받았다. 한편 醫官을 外職에 임명할 때는 대개의 경우 畿邑守令을 除授하였는데, 이것은 宮中에 병이 있을 때 이들을 쉽게 불러 올리기 위해서였다.⁸⁹⁾

顯宗 때의 醫官 柳後聖도 許浚과 같이 輔國崇祿大夫(正1品)에 올랐으나, 그의 加資에 대하여도 많은 반대가 있어 끝내 崇祿大夫에 머물고 말았다.⁹⁰⁾ 양반의 반대로 이들은 輔國崇祿大夫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醫官에게 破格의으로 正1品の 品階를 제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兩班이 이에 크게 반발, 뒤에 「續大典」을 편찬할 때 醫·譯官과 宦官·內侍에게는 輔國의 資를 除授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⁹¹⁾ 3品醫官의 子孫에게는 舊職의 除授를 禁하고,⁹²⁾ 追贈에도 제한을 가하는 등⁹³⁾ 양반과 구별하는 규정이 계속 제정되었던 것이다.

III. 鄉藥의 衰退와 明醫學의 盛行

鄉藥의 栽培와 普及은 이미 高麗 이래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鮮初에 크게 진흥되어 韓國醫學 발달의 한 轉機를 마련하였다. 특히 世宗~成宗에 이르는 약 70년간에 鄉藥에 대한 연구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크게 向上되어 韓國醫學의 自主的 기초를 완성하였던 것이다.⁹⁴⁾ 鮮初에 이렇게 鄉藥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것이 우리의 風土와 人體에 적합하고 또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朝廷에서는 여러가지 方案을 마련하였다.

즉 世宗은 16년(1434) 1월 藥材의 採取法과 乾正法을 각지에 下達하고, 外方에서 上納하는 藥材는 敎諭가 직접 封하여 醫生을 시켜 보내도록 하였고,⁹⁵⁾ 21년(1439) 4월에는 모든 鄉藥을 栽培하도록 하고, 自生藥材는 계절에 따라 採取하여 病者를 救療하도록 하되, 藥材의 栽培·採取의 多少·施藥의 勤慢을 憲司로 하여금 每季月에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⁹⁶⁾ 鄉藥의 栽培·普及·管理에 더욱 철저를 기하였으며, 나아가 同 30년(1448) 正月에는 諸道 監司에게 명하여, 鄉藥의 採取時期와 乾正을 法에 따라 하여 藥性을 잃지 않게 하고, 上納할

87) 「宣祖實錄」, 卷87 30年 4月 辛巳條, 同 癸未條, 同 卷105 31年 10月 丁卯條.

88) 「宣祖實錄」, 卷195 39年 正月 己亥·丙子·丁丑·戊寅條, 許浚은 처음 輔國崇祿大夫(正一品)에 加資되었으나, 司憲府와 司諫院의 끈질긴 반대로 崇祿大夫에 그치고 말았다.

89) 「光海君日記」, 卷36 2年 12月 丁酉條, 同 卷68 5年 7月 甲子條; 「肅宗實錄」, 卷14下 9年 12月 辛丑條: “特除柳瑞山郡守…(中略)…翌日 以上候未及復常 柳瑞不可遠出 藥房啓請 換授高陽郡守”라 하는 등 內醫에게 除授된 外職은 대부분이 畿邑守令職이었다.

90) 「顯宗實錄」, 卷6 3年 9月 丙申條 및 同 10月 丁未條.

91) 「續大典」, 卷1 吏典 京官職條: “宦侍及醫·譯 毋得授輔國資”.

92) 「受教輯錄」, 卷1 吏典 官職條: “三醫司 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93) 「續大典」, 卷1 吏典 追贈條: “醫譯中庶贈職者 勿許參判·摠管 加設同知贈職者勿許左右尹”

94) 金斗鍾, “世宗大왕의 濟生偉業과 醫藥의 自主的 發展”, 「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5輯(1957) 參照.

95) 「世宗實錄」, 卷63 16年 正月 戊申條.

96) 上揭書, 卷85 21年 4月 丙午條.

때는 採取者의 官職·姓名·日時 및 藥名을 모두 적어 올리게까지 하였던 것이다.⁹⁷⁾

또 成宗은 鄉藥의 普及과 利用을 위하여 大臣들의 의견을 물은 바 있는데, 이때 禮曹에서 건의한 鄉藥興用條件을 보면,

첫째, 전에는 內用藥材는 典醫監이, 典賣藥材는 惠民署가, 朝官에게 施與하는 藥材는 濟生院에서 專掌하였는데, 濟生院을 罷한 뒤로는 鄉藥이 크게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近來에는 內醫院을 설치하여 內用의 諸藥을 專掌케 하였기 때문에 典醫監은 다만 賜給하는 藥만 調劑하고 있으니 이는 (典醫監의) 일을 매우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惠民署의 所掌諸事를 典醫監에 移屬시키고, 惠民署는 濟生署라 칭하여 前例대로 鄉藥의 施與를 專掌하도록 하시고

둘째, 「鄉藥集成方」을 많이 印出·廣布하여 興用케 하고, 四孟朔 醫員取才時에 이것을 시험하게 하시고

셋째, 병자가 와서 證候를 물으면, 醫員은 鄉藥方으로 약을 지어 치료케 하고, 醫女는 옛날처럼 濟生署에 속하게 하시고

넷째, 「本草」에 실려 있는 鄉藥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농촌의 백성이 한 가지 藥材로 치료하여 효과가 있는 것이 있으면, 諸道를 방문하여 그것이 비록 「本草」에 실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약이면 「鄉藥本草」의 뒤에 添入하게 하시고

다섯째, 各道의 採藥人은 大官은 5戶·小官은 3戶씩 差定하여 雜役을 면해 주고 月令에 따라 전적으로 (약재를) 채취하게 하고 父子가 계승하여 世業을 삼게 하시고

여섯째, 전에 편찬한 「鄉藥本草」에는 모든 藥材의 採取·乾正法이 다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크게 쓰이는 약재가 뒤에 발견되어도 「本草」에 添錄하지 않았기 때문에 各官에서는 貢納藥材를 마음대로 採取하여 (藥의) 本性을 잃게 됨으로써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으니 자세히 (다시) 撰集하여 開刊·廣布케 하소서⁹⁸⁾

라고 건의함으로써 그대로 시행케 하였다. 다만 위의 내용 중 惠民署를 濟生署라 칭하게 하고, 鄉藥業務를 專掌케 한 것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鄉藥興用策은 政策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世宗 때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鄉藥의 藥性和 效能을 판별하기 위해 醫員이 사신을 따라 明에 가서 이를 시험, 새 藥効를 발견하는 등⁹⁹⁾ 鄉藥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鄉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 鮮初에 「鄉藥濟生集成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등 朝鮮前期의 의학 지식을 알려주는 醫書가 편찬되었던 것이며, 특히 「鄉藥集成方」의 편찬은 우리나라 醫學의 自主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韓國科學史上 빛나는 文化的 業績이었던 것이다.¹⁰⁰⁾

「鄉藥採取月令」은 麗末 이래 수요가 증가한 鄉藥의 채취를 위한 것으로서, 1년 12달 동안 각지에서 생산되는 藥材의 藥名·產地·藥味·藥性 및 乾正法을 月別로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160여종 藥材의 채취와 건정법을 기록하여 鄉藥의 栽培와 普及에 이용함으로써 鮮初 鄉藥發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藥材는 種子를 수입해다가 이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즉 世宗 때에는 甘草를 明에서 구입하여 각 도에 分種栽培시켜 수요에 충족하였다. 그러나 뒤에 成宗대에 이르러 生産이 감소되므로 王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힘써 재배하라고

97) 上揭書, 卷119 30年 正月 乙未條.

98) 「成宗實錄」, 卷98 9年 11月 壬申條.

99) 孫弘烈, 「世宗朝의 醫療政策」, 「朴性鳳教授 回甲紀念論叢」(1987), 463 參照.

100) 孫弘烈, 「麗末·鮮初 醫書의 編纂과 刊行」,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1권(1989), 44-45 參照.

지시하고 있다.¹⁰¹⁾

이와같이 世宗~成宗代에는 鄉藥은 물론 外國産 藥材의 國內栽培에도 힘써 醫學이 크게 발달하였으나 燕山君 이후 점차 등한히 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壬辰倭亂을 거치는 동안 더욱衰退하게 되었다. 이렇게 鄉藥의 이용과 보급이 점차衰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醫學教育과 科擧·取才 등에 사용된 醫書의 대부분이 中國醫書였기 때문에, 鄉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鄉藥書의 연구나 活用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世宗 12년(1430) 3월 詳定所에서 올린 醫學의 取才科目 25種 중 국내 의서는 「鄉藥集成方」 하나뿐이었고,¹⁰²⁾ 世宗 4년(1458) 3월 醫員의 必讀書로 지정한 「本草」, 「纂圖」, 「直指方」, 「得効方」, 「和劑指南」 등 諸書가 모두 中國醫書였으며,¹⁰³⁾ 또 同 10년(1464) 正月 禮曹에서 醫員取才時의 所讀講書 12種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이 중 2種(「瘡疹集」·「産書」)을 제외하고는 모두 中國醫書였던 것이다.¹⁰⁴⁾ 뒤에 成宗은 鄉藥의 보급을 위해 取才時에 「鄉藥集成方」을 시험하도록 하였으나, 「經國大典」의 醫科와 取才의 科目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鄉藥集成方」은 醫員教育에는 사용되었으나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醫員들은 中國醫書의 공부에 더 열심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鄉藥書의 醫學的 價値를 떨어뜨려 鄉藥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시험과목에서 鄉藥書가 제외된 것이 향약쇠퇴의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방만한 醫政과 藥田의 荒廢가 또 그 원인이 되었다. 中宗 34년(1539) 憲府의 啓文을 보면, 전에는 醫方(月令)에 의해 藥材를 채취·건정하여 상납하였기 때문에 藥材가 풍부하고 또 매우 精潔하였는데, 뒤에는 약재채취의 책임을 가진 각관의 守令들이 이 일을 점차 소홀히 여겨 醫生을 약재 채취보다는 다른 일에 使役함으로써 어느 약재가 어느 고을에서 생산되는 지조차 알지 못해 各官은 藥材 대신 綿布를 兩醫司에 輸納하는데, 이때 兩醫司의 奴婢와 所屬人들이 약재를 훔쳐 다시 醫司에 납입하고 綿布를 가져가 날로 藥材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시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¹⁰⁵⁾ 또 同 39년에는 三醫司에 地黃이 없어 왕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 급히 구하게 하는 한편 藥田 荒廢의 죄를 물어 兩醫司의 해당 관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⁰⁶⁾ 약전관리와 약재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御藥의 調劑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明宗 8년(1553) 正月 內醫院에서 進上藥材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甘草를 제일 적게 생산한 守令은 罷黜하고 그 다음은 降資하며, 色吏는 처벌하도록 건의하여 이를 시행하였던 것이다.¹⁰⁷⁾ 그러나 그 후에도 鄉藥의 생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그것은 宣祖 36년(1603) 2월 內用의 進上藥材 중에 不精한 것이나 심지어는 假材까지 들어 있어 담당자를 처벌한 것으로 보아¹⁰⁸⁾ 알 수 있으며, 仁祖 11년(1633)에 重刊한 「鄉藥集成方」의 崔鳴吉

101) 「成宗實錄」, 卷178 16年 4月 己酉條.

102) 「世宗實錄」, 卷47 12年 3月 戊午條의 “詳定所啓 諸學取才 經書諸芸數目” 參照.

103) 「世祖實錄」, 卷12 4年 3月 戊戌條.

104) 上揭書, 卷32 10年 正月 乙卯條.

105) 「中宗實錄」, 卷92 34年 12月 壬午條.

106) 上揭書, 卷105 39年 11月 丙申條.

107) 「各司受教」, 禮曹受教 內醫院都提調單子內條.

108) 「宣祖實錄」, 卷159 36年 2月 壬寅條.

이 쓴 跋文에도 「鄉藥方」은 廢한지 이미 100餘年이 되었다 한 것으로 보아,¹⁰⁹⁾ 이렇게 방만한 醫政의 운영이 鄉藥의 衰退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朝鮮中期의 戰亂도 鄉藥衰退의 한 원인이 되었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은 朝鮮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 했지만, 그중에서도 農土의 荒廢는 飢餓과 疾病을 발생시켰고, 藥田의 荒廢와 醫員·醫書의 散失은 疾病을 치료하는 수단을 빼앗아감으로써 鄉藥의 衰退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위에 列擧한 諸原因은 鄉藥의 衰退는 물론 우리나라 醫學의 독자적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같이 鄉藥이 점차 衰退하게 되면서 기존의 中國醫書와 새로 수입된 明醫書는 朝鮮醫學界에 핵심적인 치료서와 교과서로, 또 醫官試取의 시험서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中期 이후에는 韓醫學 보다 中國醫學, 특히 明醫學이 국내에서 크게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醫員의 科擧와 取才 및 鍼灸醫取才의 科目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經國大典」의 科擧 11個 科目과 取才 12個 科目 중에는 국내 의서로 「瘡疹集」, 「救急方」 등 2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續大典」에는 이 국내 의서가 모두 빠지고 그 대신 明 虞博의 「醫學正傳」과 李果(東垣)의 「東垣十書」¹¹⁰⁾가 들어 있고, 鍼灸醫 取才科目에도 이 두 醫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¹¹¹⁾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朝鮮時代 3大醫書의 하나인 許浚의 「東醫寶鑑」 편찬에 인용된 86種의 醫書 중 국내 의서는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등 3種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의서인데, 그중 明代 醫書가 「醫學正傳」을 비롯하여 모두 20種으로 가장 많다.

이와같이 明代 醫書가 朝鮮에 많이 전래하여 통용된 것은 明과의 교류가 그만큼 빈번하였기 때문이며, 鄉藥의 衰退와 때를 맞추어 明醫學이 조선에서 크게 발달하게 됨으로써 조선후기에는 明醫學이 盛行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明醫學이 성행하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의서의 편찬과 諺解는 계속되었고, 또 이들 醫書를 간행하여 京鄕各地에 廣布함으로써 한국의학도 꾸준히 발전하였다.

IV. 醫·藥의 對外交流

우리나라는 古代社會로부터 醫員·醫書·藥品 등을 주변의 여러나라와 交流하여 왔다. 漢族의 諸王朝와의 이러한 교류는 매우 빈번한 것이었으며, 특히 醫書와 藥品은 公·私貿易을 통해 수입·수출되어 醫學發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외국과의 교류를 中國과 日本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09) 金信根, 「韓醫藥書攷」, p. 80 「鄉藥集成方」 跋文 參照.

110) 「東垣十書」는 16卷의 醫書로서, 元의 李果(東垣) 등의 醫論을 편집한 것인데, 編輯者는 분명치 않다. 이 책은 「脈訣」(宋의 崔嘉彦)·「內外傷辨惑論」·「脾胃論」·「蘭室秘藏」(이상 李果)·「局方發揮」·「格致餘論」(이상 元의 朱震亨)·「湖洞集」(元의 王履)·「湯液本草」·「此事難知」(이상 元의 王好古)·「外科精義」(元의 齊德之) 등 6人의 醫論을 編輯한 것으로서 元末·明初 이래 성행한 醫書이며, 李果(東垣)는 金元四大家의 1인이다(三木榮, 「朝鮮醫書誌」, p. 200 參照).

111) 本稿 表 5·6·7 參照.

1. 中國과의 交流

中國과는 國初부터 藥材·醫書·醫員 등의 교류가 있었다. 특히 藥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三國時代부터 수입하여 왔던 것이므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朝鮮은 公貿易을 통한 藥材의 구입을 定例化하였던 것이다. 즉 太宗 6년(1406)부터 每 使行마다 醫員 1명을 보내 藥材를 구입하게 하였으며,¹¹²⁾ 世宗 5년(1423)부터는 每 使行마다 典醫監·惠民局·濟生院 등으로 하여금 黑麻布 5匹로 中國藥材의 구입을 恒式으로 삼게 하였다.¹¹³⁾

그런데 이렇게 使行 때 醫員이 구입해 오는 藥材는 國內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과 왕의 병에 꼭 필요한 것¹¹⁴⁾ 또는 전갈(蝟)같은 기를 수 없는 곤충¹¹⁵⁾ 등이 그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龍眼·荔枝와 같은 희귀식물을 수입하기도 하였다.¹¹⁶⁾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한 藥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鮮初 중국에서 사신편에 朝鮮의 王室에 보내온 藥材를 보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太宗과 世宗代에 보내온 藥材를 보면

木香·丁香·乳香·辰砂·黃蓮·丹砂·濟礬·川芎·縮砂·肉豆蔻·良姜·白花蛇·麝香·朱砂·沈香·蘇合油·龍腦·片腦·犀角·束香·檀香·附子·金櫻子·肉蓯蓉·巴戟·當歸·沒藥·藿香·零陵香·甘松香·蘆薈·川烏·鎖陽·龍眼·荔枝¹¹⁷⁾

등 35종의 藥材가 보이니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약재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약재 중에는 중국산이 많았지만, 熱帶地方이나 中央아시아産의 藥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중계로 한 公貿易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藥材의 수입은 주로 公貿易에 의한 것이지만, 사신을 수행한 譯官이나 醫官에 의해 密貿易되기도 하여 관계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¹¹⁸⁾ 藥材 대신 他物로 代納하는 경우도 있어¹¹⁹⁾ 중국 약재 구입에 따른 문제도 있었다. 또 구입해 오는 약재는 대부분이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高價였기 때문에 國庫의 지출도 적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鄉藥開發에 힘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世宗은 藥性を 모르는 鄉藥을 가지고 가서 이를 감별하여 사용의 適否를 판별케 하였다. 즉 同 5년(1423) 3월 盧仲禮 등을 明에 보내 國産藥材 62종을 중국산과 비교하여 藥性이 다른 14종을 찾아내 그중 새 약재 6종을 발견하였고 나머지 丹參·防己 등 8種의 사용을 금지시켰다.¹²⁰⁾

그리고 同 12년(1430) 4월 節日押物使 盧重(仲)禮가 19종의 약재를 가지고 가서 그중 10종

112) 『太宗實錄』, 卷11 6年 正月 己未條.

113) 『世宗實錄』, 卷20 5年 4月 丙辰條.

114) 上揭書, 卷13 3年 10月 丙申條 및 『燕山君日記』, 卷2 元年 正月 甲辰條.

115) 『成宗實錄』, 卷227 20年 4月 壬辰條 및 同 9月 乙丑條.

116) 『燕山君日記』, 卷21 3年 2月 壬辰條 및 同 卷27 3年 9月 丁卯條.

117) 『太宗實錄』, 卷2 元年 9月 丁亥條, 同 卷8 4年 11月 己亥條, 同 卷12 6年 12月 丁未條, 同 卷22 11年 8月 甲辰條 및 『世宗實錄』, 卷30 7年 11月 壬寅條 등.

118) 『成宗實錄』, 卷48 5年 10月 辛丑條 및 同 卷88 9年 正月 乙亥條, 『大典續錄』, 卷2 戶典 唐物貿易條, 『大典後續錄』, 卷5 刑典 禁制, 同 雜令 등.

119) 『中宗實錄』, 卷74 28年 5月 丙午條 및 同 5月 己酉條.

120) 『世宗實錄』, 卷19 5年 3月 癸卯條.

을 판별하여 오는 등¹²¹⁾ 藥品の 교류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국산약재의 중국 수출은 주로 人蔘과 松子였고, 간혹 五味子·葫蘆·虎骨·鹿角·鹿脯·昆布·薑·海衣·燒酒¹²²⁾ 등이 方物로 또는 使臣이나 수행원에게 膳物로 주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藥品の 교류는 국산약재의 수출 보다는 중국약재의 수입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醫書는 醫員과 醫生을 교육하고 民疾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醫書의 수입은 약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어서 朝鮮時代에는 많은 中國醫書가 수입·간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醫書가 수입되었는지 이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그 최초의 것으로는 太宗 15년(1415) 10월 千秋使 吳眞이 明에서 돌아올 때 綵畫針灸銅人圖 仰伏 2軸을 가져와 인쇄·반포한 것으로,¹²³⁾ 이는 針術普及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同 17년(1417) 12월에는 庾順道를 書狀官으로 明에 보내 醫·卜書를 공부하게 하고, 돌아올 때 醫書와 卜書를 구입하여 오도록 한 것으로 보아,¹²⁴⁾ 이때 醫書를 수입하였을 것이나,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는 알 수 없다.

또 이듬해 4월에는 謝恩使 延嗣宗이 明에서 구입한 醫書와 藥材를 헌납한 바 있다.¹²⁵⁾ 世祖 3년(1457) 11월에는 明에 가는 從事官인 醫官 任元濟 등에게 醫書와 佛書를 되도록 많이 구입하여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¹²⁶⁾ 이때에도 醫書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成宗 19년(1488) 10월에는 同知中樞府事 成健이 明에서 돌아올 때 「東垣十書」를 구입하여 왔는데, 당시 內醫院에도 完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元末·明初에 중국에서 크게 활용된 醫書로서, 뒤에는 醫官試取의 科目으로 매우 중요시된 것이었다. 또 언제 수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世宗 때 편찬된 「醫方類聚」에 明初 醫書인 「醫經小學」, 「玉機微義」, 「壽域神方」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의서도 이미 수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東醫寶鑑」 편찬에 참고한 明代의 醫書 「百病鈎玄」, 「續醫說」, 「傷寒瑣言」, 「經驗方」, 「婦人良方」, 「醫學正傳」, 「醫學權輿」, 「醫學集成」, 「丹溪心法」, 「醫通」, 「醫林集要」, 「醫學綱目」, 「醫學入門」, 「明醫雜著」, 「丹溪心法附餘」, 「本草集要」, 「古今醫鑑」, 「萬病回春」, 「外科發揮」, 「醫方集略」 등 20種의 醫書 역시 이미 수입되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醫書 중 「醫方集略」, 「醫學正傳」, 「玉機微義」, 「續醫說」, 「外科發揮」, 「明醫雜著」, 「醫學入門」 등은 국내에서 간행되었으며, 이외 明代 醫書로 「加減十三方」, 「周府袖珍方」, 「救急易方」, 「乾坤生意」, 「醫眼方」, 「新刊醫家必用」, 「臞仙活人心法」, 「經驗濟生良方」, 「新編診脈須知」, 「診脈要訣」, 「丹溪先生醫書纂要」, 「醫林類証集要」, 「醫書大全」, 「本草發揮」, 「証語」, 「節齋醫論」, 「食物本草」, 「食品集」, 「增補萬病回春」, 「軍中醫藥」 등도 국내에서 간행·통용되었다.¹²⁸⁾

또 仁祖 4년(1626) 6월 王이 明使에게 醫書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¹²⁹⁾ 景宗

121) 「世宗實錄」, 卷48 12年 4月 庚寅條.

122) 金斗鍾,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79), p. 258 參照.

123) 「太宗實錄」, 卷30 15年 10月 丁亥條 및 同 12月 丁丑條.

124) 上揭書, 卷34 17年 12月 乙未條.

125) 上揭書, 卷35 18年 4月 乙未條.

126) 「世宗實錄」, 卷10 3年 11月 庚午條.

127) 「成宗實錄」, 卷221 19年 10月 辛丑條.

128) 三木榮, 「朝鮮醫書誌」(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p. 184-225 參照.

129) 「仁祖實錄」, 卷13 4年 6月 壬辰條.

2년(1722) 10월에는 譯官 黃夏成이 醫書 51冊을 私質하여 內醫院에 헌납하였기 때문에 상을 준 바 있다.¹³⁰⁾ 이로 미루어 볼 때 朝鮮時代에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民疾의 치료를 위해 中國으로부터 醫書가 계속 수입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明醫學을 盛行시켰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醫學의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藥材(品)와 醫書의 交流도 많았지만, 醫員의 교류도 있었다. 그러나 醫員의 교류는 藥材나 醫書와는 달리 그리 빈번하지 않았으며, 중국 의원의 來往보다 우리나라 의원의 중국 往來가 더 많았는데, 그것은 使節을 따라가서 藥材·醫書 등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며, 전술한 바와같이 때로는 鄉藥의 藥性を 감별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醫員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使節을 따라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때 兩國 醫官 간에 의학에 관한 대화가 있었고, 때로는 중국 의원에 의한 敎習도 있었다.

먼저 世宗 7년(1425) 7월 明使를 따라온 遼東 醫員 河讓에게 청하여 王疾의 처방을 받은 바 있고,¹³¹⁾ 同 15년(1433) 11월 明使를 수행한 醫士 毛琰에게 왕의 病證을 묻고 藥을 받았으며, 同 20년 6월에는 왕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므로 그 병증을 적어 謝恩使 편에 遼東의 의원과 北京의 御醫에게 問藥한 바 있다.¹³²⁾ 또 同 23년(1441) 閏 11월에는 節日使 高得宗이 明의 禮部尚書 胡濙에게 청하여 왕의 眼疾治療藥을 구해 오는 등¹³³⁾ 醫員 간의 교류가 있었다.

또 中宗 때 江原道 觀察使를 지낸 金綠의 「謝遣醫官敎習表」에 의하면 明에서 사신편에 醫官을 보내 醫術을 敎習하였다 하였는데,¹³⁴⁾ 이것으로 보아 中國醫官의 敎習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鄭敬先이 편찬한 「醫林撮要」에 인용된 「中朝質問方」이나 「中朝傳習方」도 양국 醫官 간에 있었던 醫方의 質問과 敎習內容을 편집한 것으로 생각된다.¹³⁵⁾ 이러한 교류는 明醫學의 盛行을 초래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식을 습득,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醫家에서 많이 活用된 楊禮壽의 「醫林撮要」와 許浚의 「東醫寶鑑」의 편찬에 明醫書가 많이 참고된 것이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虞博의 「醫學正傳」, 龔廷賢의 「萬病回春」, 李梴의 「醫學入門」 등은 우리나라 醫學發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醫書로서, 「醫學正傳」과 「醫學入門」은 朝鮮後期 醫員試取의 講書로 채택됨으로써 더욱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위의 醫書들은 「東醫寶鑑」과 함께 朝鮮後期 韓醫學界에 큰 영향을 미쳐 뒤에 寶鑑派·正傳派·回春派·入門派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淸과는 醫員의 왕래는 물론 藥材와 醫書의 교류도 많지 않아서, 仁祖 21년(1643) 淸帝의 병 때문에 名醫를 청함으로 鍼醫 柳達과 藥醫 朴頤 등을 보낸 바 있으며,¹³⁷⁾ 肅宗 35년(1709)에는 淸의 사신 父敏이 醫學을 안다고 하여 朝士들이 모두 자식을 보내 藥을 문의한다 하니 羞恥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보아,¹³⁸⁾ 使節을 통한 의술의 교류가 있었음을

130) 「景宗實錄」, 卷10 2年 10月 癸亥條.

131) 「世宗實錄」, 卷29 7年 閏7月 壬戌條.

132) 上揭書, 卷62 15年 11月 壬戌條.

133) 上揭書, 卷81 20年 6月 甲子條.

134) 上揭書, 卷94 23年 11月 癸未條.

135) 「東文選」, 第34卷 表箋 謝遣醫官敎習表.

136) 三木榮, 前揭書 p. 82 參照.

137) 「仁祖實錄」, 卷44 21年 4月 己巳條.

138) 「肅宗實錄」, 卷47 35年 5月 辛巳條.

알 수 있다. 또 同 45년(1719) 9월에는 淸使가 국왕의 病證을 자세히 묻고, 돌아가 淸帝에게 奏達하겠다고 하는 등¹³⁹⁾ 많지는 않았지만 淸과의 교류도 있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中國과의 交流는 주로 明과의 관계였으며, 朝鮮은 中國으로부터 주로 藥材와 醫書를 수입, 自國 醫學의 學問的 發達과 技術的 發展에 活用하였던 것이다.

2. 日本과의 交流

麗末·鮮初 猖獗한 倭寇는 양국간의 文化的 交流를 단절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는 倭寇가 終息된 世宗 이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日本과의 交流는 주로 倭王을 비롯한 各地의 領主에 의한 藥材의 헌납과 이에 대한 賜給의 형식을 취한 公貿易이 많았으나, 양국 商人에 의한 私貿易도 적지 않은 것이었다.

먼저 醫員과 醫術의 교류를 보면, 太祖 6년(1397) 8월 倭僧 平原海가 妻子와 함께 來降하였는데, 그는 醫術에 통하였기 때문에 典醫 博士에 임명되었다.¹⁴⁰⁾ 그는 太宗의 신임을 받아 內藥房 醫員을 거쳐 뒤에는 典醫監 判事에 이르렀으며,¹⁴¹⁾ 그아들 平順도 世宗과 世祖代에 內醫로 활약한 바 있다. 또 世宗 29년(1447) 5월에는 對馬島主 宗貞盛의 使人인 僧 崇泰가 醫術에 정통하다 하여 그를 興天寺에 머물게 하고, 醫員 全循義·金智·邊漢山 등을 보내 醫術을 전해 받게 하는 한편, 환자를 그에게 보내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3시간 후에(병이 나아) 돌아온 것으로 보아, 醫術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¹⁴²⁾ 文宗 元年(1451) 正月에는 平安道 觀察使가 金於郎의 蠱毒治療法을 적어 올렸는데, 이 치료법은 그의 外曾祖 盧端知가 倭寇의 포로가 되어 15년간 外國에 있는 동안 배운 것으로, 돌아온 뒤 於郎의 父 金千興에게 전수한 것을 그가 다시 전수 받은 치료법으로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文宗은 이를 中外에 알려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한 바 있다.¹⁴³⁾ 이와는 반대로 倭人이 朝鮮에 와서 醫術을 배운 뒤 돌아간 예도 있다. 즉 1440년(세종 22) 日本의 足利義教(將軍)가 죽은 뒤 그의 부하로 있던 渡邊小太郎義隆이 亂을 피하여 朝鮮에 와서 7년간 있다가 갔는데, 그동안 그는 眼科를 研修하였다. 귀국 후 安藝의 土生에 거주하면서 姓을 土生으로 고쳤는데 그 子孫은 대대로 眼科를 業으로 삼아 江戸時代末期 眼科醫로 이름을 남긴 土生玄碩도 그의 10世孫이라 한다.¹⁴⁴⁾ 당시 조선은 醫學이 專門化되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醫學이 아직 낙후되어 있던 일본은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또 端宗 元年(1453) 7월에는 日本 大內殿 多多良의 使者인 僧 喜益이 針灸와 醫方에 정통하다 하여 內醫 金吉浩·鄭次良·金智 등으로 하여금 가서 그術을 배우게 하는 등¹⁴⁵⁾ 倭醫의 來往이 몇차례 있었다. 朝鮮 醫員의 日本派遣은, 孝宗 7년(1656) 12월 對馬島主 平義成이 병으로 禮曹에 글을 보내 醫生의 파견을 요청하므로 醫員인 主簿 韓亨國에게 小通詞 1명·小童 1명·使令 2명·奴子 1명을 달려 파견하였는

139) 「肅宗實錄」, 卷63 45年 3月 丙子條.

140) 「太祖實錄」, 卷12 6年 8月 甲辰條.

141) 「太宗實錄」, 卷17 9年 閏4月 辛酉條.

142) 「世宗實錄」, 卷116 29年 5月 丙申條.

143) 「文宗實錄」, 卷5 元年 正月 癸丑條. 여기에는 그 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省略하였음.

144) 富士川游, 「日本醫學史」(東京, 日新書院, 1941), pp. 558-560 參照.

145) 「端宗實錄」, 卷7 元年 7月 庚午條.

데, 이들은 이듬해 2월 귀국하였다.¹⁴⁶⁾ 그리고 顯宗 13년(1672) 7월에는 對馬島主의 요청으로 醫官인 主簿 咸得一이 파견되어 島主의 병을 치료하고 가을에 돌아왔으며,¹⁴⁷⁾ 肅宗 4년(1678) 9월에도 對馬島主가 醫員 朴尙文을 청하므로 보낸 바 있다.¹⁴⁸⁾

이와같이 일본과의 醫員·醫術의 交流는 주로 사절을 따라온 醫員이나 日本의 요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日本에 가는 通信使 一行에 醫員 1명이 수행하였고, 후기에는 兩醫司(典醫監·惠民署) 醫員 각 1명(或 加定 1명)이 수행하였으므로,¹⁴⁹⁾ 이들에 의한 교류도 많이 있었던 것이다. 朝鮮後期는 日本의 德川幕府時代(江戸時代)로서 鎖國政策에 의해 國民이 외국인을 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때 대규모의 사절단인 朝鮮通信使의 來往은,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외국의 文物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朝鮮使節이 오면 日本 各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朝鮮의 文士·醫員과 대담하였기 때문에, 朝鮮에서도 학식 있는 자들을 보냈고, 日本에서도 醫學에 정통한 醫官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朝·日의 文士와 醫員의 問答集은 그내용에 있어서 전부가 醫論·醫方에 관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詩文集 안에, 또 어떤 것은 紀行文에 실려 있기도 하지만, 「桑韓醫問答」과 같이 순전한 醫事問答集도 있어 그간의 兩國 醫員의 交流를 짐작케 해주고 있다.¹⁵¹⁾ 당시 日本은 朝鮮에 비해 醫學·醫術의 수준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問答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이며, 朝鮮의 醫員이 日本의 의학지식을 전수받은 것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日本은 朝鮮의 의술은 물론 醫書의 구입을 희망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醫書를 보내주었다.

즉 成宗 20년(1489) 8월 倭使가 책을 구하므로 「杜詩」등 文學書와 함께 「得効方」을 보내 주었으며,¹⁵¹⁾ 中宗 23년(1528) 8월에도 醫書 3種을 구하므로 그중 1種(書名未詳)을 준 바 있다.¹⁵²⁾ 또 仁祖 18년(1640) 3월에는 馬醫書와 鷹鵠方書 등을 구하였고, 顯宗 3년(1662) 3월에는 許浚의 「東醫寶鑑」 25卷과 楊禮壽의 「醫林撮要」 13卷을 日本의 요청으로 보내바 있으며, 同 11년 6월에는 中國醫書인 「備急本草」와 「醫學入門」을 倭人의 청에 의해 購買케 하는 등,¹⁵³⁾ 日本에 醫書를 보내주었다. 그외에 전해진 경위는 알 수 없으나, 「世醫得効方」등 77種의 醫書가 日本에 전해져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醫方類聚」, 「東醫寶鑑」등 17種의 醫書가 日本 내에서 刊行·活用되어 醫學發達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¹⁵⁴⁾

한편 日本의 醫方이 국내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즉 成宗 4년(1473) 10월 日本 畠山殿의 사자 照隣이 來朝하였을 때 副使 良心이 明의 劉瑾이 저술한 「神應經」과 함께 「八穴灸法」을 헌납하였는데 이것은 日本의 和氣·丹波 兩氏의 癰疽治療法을 전한 것이다. 이 치료법은 「神應經」의 卷末에 붙혀 다음해 11월 한 책으로 간행되었는데, 뒤에 다시 日本에 전해져 1645년(仁

146) 「孝宗實錄」, 卷17 7年 12月 丁酉條 및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大阪, 三木榮宅, 1963), p. 318 參照.

147) 「顯宗實錄」, 卷20 13年 7月 乙巳條.

148) 「肅宗實錄」, 卷7 4年 9月 戊子條.

149) 「續大典」, 卷3 禮典 雜令條.

15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p. 313-317 參照.

151) 「成宗實錄」, 卷231 20年 8月 辛亥條.

152) 「中宗實錄」, 卷62 23年 8月 丙辰條.

153) 金斗鍾, 前掲書, p. 326.

15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p. 318-328 參照.

祖 23·正保 2) 翻印되었다.¹⁵⁵⁾

이러한 醫員·醫書의 교류보다 더욱 빈번했던 것은 藥材의 교류였다. 世宗 元年(1419, 己亥) 對馬島征伐을 계기로 倭寇는 거의 終息되고 平和的인 通交者로 전환된 후 壬辰倭亂이 일어날 때까지, 三浦倭亂으로 일시 중단되거나 通商規程이 개정되어, 來往하는 日本 각지의 歲遣船의 수가 일정치는 않았으나, 世宗代 歲遣船約定者 112명이 1년중에 파견하는 歲遣船·受職船·受圖書人船이 모두 204~218隻이나 되었고,¹⁵⁶⁾ 이때 進上·下賜의 형식을 취한 公貿易의 物量도 상당히 많아 국가의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 朝鮮에서 파견한 使節은 太祖 7년~宣祖 25년까지 2世紀간 모두 62回였고,¹⁵⁷⁾ 倭亂 이후 宣祖 40년(1607)~純祖 11년(1811)까지 朝鮮後期에 파견된 通信使는 모두 12回로서¹⁵⁸⁾ 前後期 합해 74回였는데, 이것은 入國倭使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日本과의 交易은 輸出보다 輸入이 훨씬 많았고, 그중에는 藥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本稿에서는 藥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수입된 물품이 100餘種이나 되므로 그品目を 모두 列舉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보면, 胡椒·蘇木(丹木)·白礬(明礬)·朱紅·硫黃·黑角(水牛角)·龍腦·樟腦·象牙·犀角·銅·鐵鐵·蘇合香·麒麟膠 등을 들 수 있는데, 위 품목 중 銅과 鐵鐵을 제외하고는 모두 藥材로서 日本産 뿐만 아니라 南方産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倭亂前에는 胡椒·蘇木·白礬·朱紅·彩畫硯匣·銅盤·銅鏡·紋紙·金屏風 등이 主進上品이었었는데, 이에 대해 朝鮮에서는 人蔘·虎皮·豹皮·白苧布·黑麻布·白綿紬·白綿布·花席·筆·墨·鷹 등을 回賜品으로 주었고, 特定物品(鷹·藥材·陶器·書籍 등)을 政府의 명이나 日本 諸大名의 요청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別幅回賜品으로는 虎肉·虎胆·栢子·栗·胡桃·棗 등을 주었다.¹⁵⁹⁾

日本의 進上品중에는 특이한 것도 있어서 世宗 3년(1421) 11월 九州의 源道鎮이 보낸 것 중 樟腦와 砂礪은 南方産으로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이다. 回賜品 중 藥材로는 人蔘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어서 거의 매번 賜給하고 있으며, 藥品으로는 清心元과 蘇合元이 조선의 가장 저명한 藥品이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여 보내주기도 하였다.¹⁶¹⁾ 藥材의 경우 前期에는 그 품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世宗 28년(1446) 2월 對馬島主 宗貞盛이 米豆와 藥材를 요청하므로 米豆 각 100石과 人蔘·五味子·大黃·黃耆·黃芩·杏仁·蓮子·天麻 등의 藥材를 下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¹⁶²⁾ 人蔘 이외의 다른 약재도 보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前期에는 進上品에 대해 厚하게 下賜하여 필요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물건도 다 받았기 때문에 胡椒의 경우는 한때 義盈庫가 넘칠 정도 였지만, 藥材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종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¹⁶³⁾ 또 成宗은 通信使에게 지시하여 우리나라에서

155) 三木榮, 上掲書, pp.160-163 參照.

156)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 9, pp.366-367 表1~2.

157) 國史編纂委員會, 上掲書, p.409 表 9 參照.

158)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 12, p.369 圖表 參照.

15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東京, 吉川弘文館, 1969), p.324.

160) 「世宗實錄」, 卷14 3年 11月 乙丑條.

161) 「太宗實錄」, 卷35 18年 3月 甲子條.

162) 「世宗實錄」, 卷111 28年 2月 乙丑條.

163) 「成宗實錄」, 卷132 12年 8月 戊辰條, 同 卷140 13年 4月 甲寅條, 同 卷176 16年 3月 丁未條, 同 卷184 16年 10月 戊子條 등.

생산되지 않는 약재를 찾아보아 구입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¹⁶⁴⁾ 不産藥材의 수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같이 前期는 주로 進上과 下賜의 형식을 취한 것이었지만, 壬辰倭亂 후 성립된 己酉條約(光海君 元年, 1609)에 의해 수입품에 대한 交換率이 정해졌다. 즉 銅鐵은 100斤에 公木(木綿) 60疋·鐵鐵은 100斤에 200疋·豆錫은 100斤에 100疋·胡椒는 100斤에 100疋·蘇木은 100斤에 33疋·白礬은 100斤에 13疋·黑角은 1桶에 3疋이 恒式이 되어,¹⁶⁵⁾ 이들 물품을 수입하였다.

한편 12회에 걸친 後期の 通信使行은 日本에 朝鮮의 藥品과 藥材를 많이 전했다. 즉 藥品은 淸心元, 藥材는 人蔘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약재로는 生地黃·麥門冬·赤白茯苓 등 42종이나 되었다. 그러나 後期에 들어와 日本은 前期와는 달리 朝鮮의 藥材를 구하는 것 이외에 藥材의 種子(根·實)를 구해 自國에 移植하고자 했다. 즉 仁祖 16년(1638) 4월에는 日本 關白의 叔父 紀伊大納言이 土産藥材 36종의 根과 實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보내주었는데,¹⁶⁶⁾ 이중 沙蔘·丹蔘·防己 등 21종은 ‘實’을, 薤·百部根·草薢 등 15種은 根을 구하는 것이었다.¹⁶⁷⁾ 그러나 이것들이 재배되어 성공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仁祖 17년과 18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藥材와 藥種子의 구입을 희망하였는데, 당시는 丙子胡亂이 끝난 지 얼마 안되어 그 요청을 다 들어주지 못하였지만, 18년에는 26종의 약재를, 同 20년(1642)에는 31종의 藥材를 賜給함으로써,¹⁶⁸⁾ 日本은 많은 藥材의 種子를 가져다가 이를 栽培하였다. 그후에도 日本은 對馬島를 중계로 藥材를 交易하였는데, 肅宗 2년(1676) 이후 점차 수량이 감소되고, 藥材도 人蔘·鹿茸·熊胆·虎骨 등 특수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日本의 이러한 朝鮮藥材의 수입은 民疾의 치료는 물론 日本醫學, 특히 本草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3. 南方諸國과의 交流

일본 이외의 南方諸國과도 藥材의 교류가 있었다. 즉 琉球·暹羅斛國(삼·타이)·瓜哇國(Palembang) 등이 그것이다. 琉球를 제외한 두 나라의 來往은 한두 차례에 지나지 않았으나 南方産의 藥材를 다소나마 접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먼저 琉球는 麗末 昌王 2년(1389) 8월에 中山王 察度가 사신을 보내 倭寇에게 잡혀갔던 高麗人을 刷還하면서 硫黃 300斤·蘇木 600斤·胡椒 300斤·甲 20部를 바치었고,¹⁶⁹⁾ 朝鮮 太祖 元年(1392) 8월 사신을 보낸¹⁷⁰⁾ 이래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土産藥材類를 헌납하였다. 世宗 卽位年(1418) 8월에도 사신을 보내 丹木(蘇木)·石礬·深黃·川芎·藿香·沉香 등을 바쳤고, 同 13년(1431) 12월 正使 夏禮久가 烏梅木·深中青·胡椒·蔓藤·束香 등을 바쳤다.¹⁷¹⁾ 또 成宗 元年(1470) 4월 國王 尚德이 日本商船편에 書信과 禮物을 보냈는데, 그 물품 중에 犀角·象牙·水牛角·束香·降眞

164) 『成宗實錄』, 卷102 10年 3月 辛巳條.

165) 『通文館志』, 卷5 交隣上 年例送使 一特送使條.

166) 『仁祖實錄』, 卷36 16年 4月 甲午條.

16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329.

168) 『典客司日記』, 仁祖 19年 8月 13日條.

169) 『高麗史』, 列傳 卷50 辛禰5 昌王 2年 8月條.

170) 『太祖實錄』, 卷1 元年 8月 丁卯條.

171) 『世宗實錄』, 卷1 卽位年 8月 辛卯條 및 同 卷54 13年 11月 乙亥條.

香·檀香·木香·丁香·肉荳蔻·藁朮·烏木·蘇木·胡椒 등의 藥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¹⁷²⁾ 同 2년 12월과 4년 3월, 同 10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다녀감으로써, 국내에 南方產의 약재가 공급되었던 것이다.

暹羅斛國은 琉球와 거의 동시에 來朝하였다. 즉 高麗 昌王 元年(1389) 7월 國書와 土產物을 바쳤고, 朝鮮時代에는 太祖 2년(1393) 6월 張思導 등 20명이 蘇木·束香 각 1千斤씩과 土人 2명을 바쳐, 이들로 하여금 關門을 지키게 하는 등¹⁷³⁾ 2-3차 왕래가 있었으나 빈번하지는 않았다. 끝으로 瓜哇國은 당시 東西海上交通의 요지로서 海外貿易의 중심지였던 수마트라의 東南部인 Palembang인 바, 중국 남부 및 日本 등과는 상당한 교역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와는 기록상 두 차례의 來往이 있었다. 첫번째는 太祖 3년(1394) 사신이 다녀간 것이고, 두번째는 太宗 6년(1406) 8월이었는데, 이때 이들은 全羅道 羣山島에서 倭寇의 습격을 받아 배에 실고 온 鸚鵡 등 鳥類와 沈香·龍腦·胡椒·蘇木香 등 약재를 약탈당하였으며, 60명이 잡혀가고, 21명이 戰死, 40명만 살아남는 피해를 당하였다.¹⁷⁴⁾ 이렇듯 琉球·暹羅斛國·瓜哇國 등과의 交易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來往回數나 交易量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들을 통한 南方產의 진귀한 藥材의 헌납은 藥材의 공급과 함께 朝鮮의 對外交渉史上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V. 醫書의 編纂과 刊行

朝鮮時代에는 前期에 많은 醫書가 編纂·諺譯·刊行되어 韓國醫學史上 빛나는 金字塔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醫學은 人間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中期와 後期에도 많은 醫書가 著述·刊行되었다. 本節에서는 中宗~景宗代에 著述·刊行된 國內外 醫書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東醫寶鑑」의 編纂

朝鮮時代 대표적 醫書의 하나인 「東醫寶鑑」은 御醫 許浚이 단독으로 14년(宣祖 29, 1596~光海君 2, 1610) 간의 각고 끝에 편찬한 것으로서 국내는 물론 中國과 日本에서도 간행되어 널리 實用되었다. 「東醫寶鑑」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¹⁷⁵⁾ 本稿에서는 許浚의 生涯·編纂過程·醫書로서의 가치 등은 제외하고, 이 책의 편찬목적과 그 歷史的 意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편찬 목적을 보면

첫째, 李廷龜가 이 책 序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¹⁷⁶⁾ 당시에는 醫員이 증가하여 학설은 많아졌으나 새로운 것이 없고, 남의 理論을 표절하여 著述은 늘어났으나 醫術發達에 전혀 도움이 되지

17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159 參照.

173) 「太祖實錄」, 卷3 2年 6月 庚寅條.

174) 「太宗實錄」, 卷12 6年 8月 丁酉條.

175)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로는 金斗鍾의 「韓國醫學史」,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朝鮮醫署誌」, 「龜岩學報」 創刊號 등이 있다.

176) 許浚, 「東醫寶鑑」 序文.

않고 있으며, 庸劣한 醫員들이 方文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약을 잘못 쓰거나 固陋한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여 逆效果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둘째, 당시는 戰亂으로 전국이 荒廢하여 병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많은 醫書가 散失되어 처방마저 힘든 지경이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醫書의 출현이 기대되던 때였으며 셋째, 仁政을 목표로 하는 王道政治를 실현하고자 하는 爲政者의 愛民·恤民의 精神을 받들고, 또 신하된 입장에서 이를 실현하려 하였기 때문이며 넷째, 著者인 許浚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철실히 깨닫고, 醫術으로써 活人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은 물론 당시 醫學界의 전 지식을 총망라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찬하려 했으며, 나아가 쉽게 구할 수 있는 鄉藥을 活用하고 또 이를 권장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東醫寶鑑」의 實用的 價値와 歷史的 的의를 살펴보면 첫째, 그 내용에는 일부 道義的인 厚生實用主義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책의 “集例” 중에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 道教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針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

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醫書에는 없는 內景篇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清靜과 修養을 本으로 삼은 道家의 實用性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實用主義는 종래 의학의 空想的 理論을 배격하고, 지극히 科學的인 입장에서 당시 의학계의 전지식을 총정리하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 鄉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약의 보급과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集例”에서 “鄉藥에 대하여는 藥名·產地·採取時月·陰陽乾正法 등이 씌어 있음으로 이용하기 쉽고 또 멀리서 구해 온다든지 얻기 어렵다든지 하는 폐단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치료하는 데 있어서 鄉藥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湯液篇 3卷에 들어 있는 鄉藥 중 640개의 鄉藥名을 한글로 기재하였는 바, 이는 누구나 쉽게 鄉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한편 이러한 한글 鄉藥名은 국어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鄉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하던 당시에 「東醫寶鑑」은 향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韓醫學을 부흥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셋째, 방대한 參考文獻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實用醫書라는 점이다. 許浚이 이 책을 편찬하는 데 참고한 醫書는 86種이나 된다. 그중에는 「天元玉冊」, 「黃帝素問」, 「靈樞」, 「傷寒論」, 「病源候論」, 「千金方」, 「證類本草」 등 의학의 기본서와 宋·元·明의 주요 의서, 특히 許浚의 在世 직전에 撰述된 「醫學正傳」, 「丹溪心法附餘」, 「醫林集要」, 「醫學綱目」, 「醫學入門」, 「萬病回春」 등 明의 대표적 醫書와 우리나라의 의서인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등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전의학을 融和統一하였음은 물론 정연한 체제를 갖추었으므로 매 권마다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 책은 東洋醫學의 대표적 의서를 참고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臨床醫에게 매우 유용하게 실용될 수 있었다.

넷째, 「東醫寶鑑」은 한국의 의학수준을 세계에 과시한 實用醫書로서 歷史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病證에 따라 病論과 方藥을 빠짐없이 채록하였고, 또 그 出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古今의 治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곳에 따라서는 俗方과 자기

의 經驗方을 붙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臨床醫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中國과 日本에까지 널리 전해져서 여러차례 刊行되었다. 이 책이 東洋 3國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어느 다른 醫書보다 實用的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며, 한국인의 저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이용된 것은 「東醫寶鑑」이 으뜸이라는 점에서 歷史的 意義를 갖는 것이다.

다섯째, 이 책에서 許浚은 韓國醫學을 하나의 독립된 의학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集例”에서 中國의 醫學을 “北醫”(李杲)와 “南醫”(朱震亨)로 나누고, 우리나라를 “東醫”라 하면서, 그것은 단지 동쪽에 있다는 지역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醫學의 연구가 독자적으로 끊임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東醫”라 부를 수 있다고 함으로써, 韓國醫學이 중국과 대동한 의학적 전통과 수준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의학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東醫寶鑑」은 단순히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上述한 바와 같은 숭고하고 뚜렷한 목적을 지닌 의서였기 때문에 學術的·實用的 價値와 함께 歷史的 意義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許浚은 上級技術官인 醫官으로서 치료에 능함은 물론 「東醫寶鑑」을 비롯하여 「新纂辟瘟方」, 「辟瘟神方」 등의 醫書를 저술하고,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 등 의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한국의학의 학문적 기술적 발달에 큰 공적을 이룩하였다.

2. 其他醫書의 編纂·診譯·刊行

朝鮮時代 醫學의 自主的 발전은 成宗代를 고비로 그 속도가 둔화되고, 明醫學이 성행하였다. 또 그후에 발달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은 朝鮮의 의학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醫書가 편찬되고, 民疾治療를 목적으로 簡易方書가 撰述되었으며, 이러한 醫書를 診解·刊行하여 의술보급에 힘썼던 것이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醫書의 編纂·診譯·刊行을 國內外醫書로 나누어 燕山君~顯宗까지를 고찰하고자 한다.¹⁷⁷⁾

1) 國內醫書

① 「神仙太乙紫金丹方」 1卷(佚) 李宗準 撰; 이 책은 燕山君 3년(1497) 李宗準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 太乙紫金丹을 해석하고, 이것을 언해하여 刊行한 것이다. 이 책은 뒤에 간행된 許浚의 「東醫寶鑑」, 內醫院의 「臘藥症治方」, 康命吉의 「濟衆新編」, 黃度淵의 「醫宗損益」에 인용되어 있으며, 內醫院의 藥方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民間의 救急方으로서 洪萬選의 「山林經濟」에도 原文이 轉載되어 있고, 현재에도 그 처방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抄本으로 알려지고 있다. 李宗準의 字는 仲鈞, 號는 燭齋, 慶州人으로 成宗 16년(1485) 文科에 급제한 후 三司를 역임한 인물로 詩·畫에 능하였으나 金宗直의 門人으로 戊午士禍에 화를 입었다.

② 「救急易解方」 1卷(存), 尹弼商·金興壽 等 撰; 燕山君 4년(1498) 가을에 內醫院 提調

177) 本節에 記述한 醫書의 編纂·診譯·刊行 등의 내용은 金斗鍾의 「韓國醫學史」, 三木榮의 「朝鮮醫書誌」, 「朝鮮醫學史及疾病史」를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但 國內醫書의 編纂은 燕山君 이후부터, 그리고 外國醫書의 刊行은 鮮初부터 考察하였음.

尹弼商·洪遺達, 副提調 鄭眉壽, 內醫 金興壽 등이 왕명으로 편찬, 諺解하여 다음 해 3월 校書館에서 刊行·頒布한 것이다. 權健의 跋文에 의하면, 世宗代의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는 너무 방대하고, 世祖代의 「救急方」은 간략한 데다가 鄉藥만을 취했기 때문에, 널리 뽑아 간략하게 한 것은 이 책만 같지 못하다. 이책은 간략하면서도 그 要點을 잃지 않았으므로 僻村의 匹夫라도 알기 쉽게 해석한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리라 생각된다.

③ 「妊娠最要方」 1卷(存), 著者未詳; 燕山君 9년(1503)에 간행한 小冊字로 그 내용은 妊娠可食·妊娠無忌·禁忌內無毒可食·妊娠食忌·凡食物相反 등 임신부를 위해 편찬한 것이다.

④ 「諺解辟瘟方」·「諺解瘡疹方」(佚); 이 두 醫書는 同知中樞府事 金安國이 慶尚道 觀察使로 있을 때 諺解한 「呂氏鄉約」, 「正俗」, 「農書」, 「蠶書」, 「(諺解)辟瘟方」과 이미 번역되어 있던 「二倫行實圖」, 「(諺解)瘡疹方」을 간행하여 반포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간행할 것을 주청하여 왕명으로 撰集廳에서 開刊·廣布케한 것이다.¹⁷⁸⁾ 金安國이 諺解한 「辟瘟方」은 世宗 때 이미 번역한 것으로서, 절판되어 다시 번역한 것이고, 「諺解瘡疹集」은 언제 번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포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간행한 것이다.

⑤ 「續辟瘟方」(佚)·「簡易辟瘟方」 1卷(存); 이 책은 中宗 20년(1625) 정월 壬午(23일) 「新抄辟瘟方」을 만들어 전례대로 언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瘟疫이 심한 함경·평안 양도에는 우선 筆寫하여 辟瘟藥과 함께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 책을 전에 편찬한 「辟瘟方」과 구별하기 위해 「續辟瘟方」이라 하였다.¹⁷⁹⁾ 그런데 現存하는 「簡易辟瘟方」의 서문에 의하면, 甲申年(中宗 19년, 1624) 가을 關西地方에 瘟疫이 크게 일어 백성이 많이 상하였는데, 이것이 이듬해(乙酉) 봄까지 그치지 않으므로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에게 특명하여 諸方에서 瘟疫治療法을 뽑아 「簡易辟瘟方」을 만들게 하고, 이를 번역하여 嘉靖 4年 乙酉 正月 25日(中宗 20년, 1625)에 中外에 반포하게 하였다 한 것으로 보아,¹⁸⁰⁾ 이 두 책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을 편찬한 3인은 모두 中宗代의 名醫이다.

⑥ 「分門瘟疫易解方」 1卷(存); 이 책은 中宗 37년(1542)에 간행된 것으로 이 해에 함경·강원·경상·전라도에 瘟疫이 심해, 왕명으로 金安國이 朴世舉·洪況率·文世璉 등과 諸方書에서 100餘方을 뽑아 4門으로 나누고, 여기에 藥材의 鄉名과 채취법을 첨가, 諺解하여 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⑦ 「村家救急方」 1卷(存), 金正國 撰; 이 책은 金正國이 窮村의 백성을 위해 諸醫書에서 촌민이 쉽게 얻을 수 있는 藥方과 父老의 聞見에서 효력을 본 것을 수집하여 편찬한 책으로, 3門에 70餘 病證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한 것이다. 中宗 33년(1538)에 간행되었다.

⑧ 「黃疸瘡疾治療方」(佚); 이 책은 明宗 5년(1550) 12월 諸州·郡·縣·僉使·萬戶處와 監司 및 州府의 巨邑에 인쇄하여 보내,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黃疸과 瘡疾을 치료하도록 편찬한 것이다.¹⁸¹⁾

⑨ 「治腫秘方」 1卷(存), 任彦國 撰; 이 책은 井邑에 살던 任彦國이 治腫法을 배워 많은 사람을 치료한 秘方으로, 全羅道 觀察使 安瑋가 이를 얻어 錦山郡守에게 부탁하여 明宗 14년(1559)에 간행한 것이다.

178)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己巳條.

179) 上揭書, 卷52 20年 正月 壬午條.

180) 三木榮, 「朝鮮醫書誌」, pp. 67~70 參照.

181) 「明宗實錄」, 卷10 5年 12月 己亥條.

⑩ 「救急良方」 1卷(存), 內醫院編; 安瑋의 跋文에 의하면 이 책은 당시의 左相이 內醫院 醫官들에게 명하여 撰集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지극히 簡要하고 신기한 효과가 있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의 「治腫秘方」에 붙여 간행한다고 하였다. 明宗 14년 간행.

⑪ 「治腫指南」 2卷(存); 이 책의 저자는 확실치 않으나 「治腫秘方」을 저술한 任彦國이나 그의 후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任彦國의 치료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針刺에 의한 切開法도 설명하고 있으며, 背腫·內腫 등 모두 95種의 證治法이 열거되어 있다.

⑫ 「醫林撮要」 13卷 13冊(存), 楊禮壽 撰; 退思翁 楊禮壽가 撰述한 朝鮮中期 代表的 醫書의 하나이다. 疾病을 121門으로 나누고, 病論과 處方을 기록한 것으로서, 참고한 의서가 「鄉藥集成方」, 「醫學正傳」, 「東垣十書」, 「簡易辟瘟方」, 「醫方類聚」 등 28종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朝鮮前期로부터 당대까지의 저명한 국내의서와 중국의서가 거의 망라되어 있어 당시 醫學의 전모를 살필 수 있으며, 刊行年代는 孝宗~顯宗代로 추정된다.¹⁸²⁾

⑬ 「鍼灸要訣」 1卷(存), 柳成龍 撰; 宣祖 33년(1600)에 간행된 이 醫書는 「醫學入門」의 鍼灸篇을 계통적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圖表로 표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편찬한 것이다.

⑭ 「診解救急方」 2卷(存), 世祖命 撰·許浚 診解; 이 책은 世祖 때 왕명으로 편찬한 것을 許浚이 王命으로 診解하여 宣祖 34년(1601) 경에 內醫院에서 간행하였다. 편찬 때 인용한 의서는 「直指方」, 「聖惠方」,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産書」 등 국내외 의서 34종 이었다.

⑮ 「診解痘瘡集要」 2卷(存), 許浚 撰; 이 책은 許浚이 宣祖 34년에 편찬하여 同 41년(1608)에 內醫院에서 開刊한 것으로 原本이 어느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世祖代의 任元濟가 편찬한 「瘡疹集」이 아닌가 한다.¹⁸³⁾

⑯ 「診解胎産集要」 1卷(存), 許浚 撰; 이 책은 許浚이 편찬하여 宣祖 41년 內醫院에서 開刊한 것으로서, 前述한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와 함께 同 34년에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世宗 16년(1434) 盧重禮가 撰述한 「胎産要錄」을 底本으로 해서 당시의 明醫書를 참고로 改撰한 것이다.

⑰ 「東醫寶鑑」 25卷 25冊(存), 許浚撰; 本書는 宣祖 29년(1596) 許浚이 왕명으로 鄭碯 등과 함께 편찬을 시작하였다가 丁酉再亂(1597)으로 중단, 그후 단독으로 편찬하여 光海君 2년(1610)에 편찬을 완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醫書의 하나로서 3년 뒤인 光海君 5년(1613) 內醫院에서 開刊하였다. 이 책은 目錄 2卷·內景篇 4卷·外形篇 4卷·雜病篇 11卷·湯液篇 3卷·鍼灸篇 1卷 등 25卷 25冊으로 되어 있으며, 引用書는 국내의서는 물론 中國의 古代로부터 明代 醫書까지 모두 86種이나 되는 방대한 것이었고, 편찬 기간도 전후 14년이나 걸린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醫書의 百科全書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醫員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차례 인쇄되어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다.

⑱ 「新纂辟瘟方」 1卷(存), 許浚 撰; 이 책은 光海君 5년(1613) 內醫院에서 開刊한 것으로서, 전국에 유행하던 疫癘를 치료하기 위해 전에 간행되었던 醫書(「辟瘟方」, 「診解辟瘟方」, 「簡易辟瘟方」)를 보완, 찬술하여 頒布한 것이다. 이 책은 中宗 때의 「簡易辟瘟方」에 비해 詳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고, 또 科學的으로도 탁월한 醫書로 평가되고 있다.

⑲ 「辟疫新方」 1卷(存), 許浚 撰; 이 책은 光海君 5년(1613) 12월 內醫院에서 刊行한

18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178; 「朝鮮醫書誌」, pp. 84-86 參照.

183) 金斗鍾, 前掲書, p. 300 參照.

것이다. 이 해 가을부터 唐毒疫이라는 유행성 전염병이 유행,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許浚에게 명하여 새로 편찬한 것이다. 唐毒疫은 확실치는 않으나 猩紅熱로 추정되는데 당시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類의 전염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許浚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것은 그의 銳利한 관찰력과 깊은 의학지식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서,¹⁸⁴⁾ 위의 두 傳染病專門醫書와 「東醫寶鑑」 등 그의 저서를 통해 당시 조선의 의학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②⑩ 「鍼灸經驗方」 1卷(存), 許任 撰; 이 책은 朝鮮中期의 대표적 鍼醫인 許任의 저서로서, 仁祖 22년(1644)에 간행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각종 질병에 대한 鍼灸治療法을 자기가 발명한 補瀉法으로 설명하고 있다. 補瀉法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許任은 자기의 경험으로 新說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자적 鍼灸學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번역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이를 언해한 「鍼灸經驗方諺解」가 전하고 있다.¹⁸⁵⁾

②⑪ 「四醫經驗方」 1卷(存), 撰者未詳; 이 책은 四醫, 즉 李碩幹·蔡得己·朴濂·許任 등의 經驗方과 「本草」, 「東醫寶鑑」, 「聞見方」 등의 方文을 수집, 後人이 편찬한 것이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常用方을 모아 응급치료에 응용하던 것으로 近來까지 널리 사용되던 醫書이다.

②⑫ 「辟瘟新方」 1卷(存) 安景昌 撰; 이 책은 孝宗 4년(1653) 봄 西海에 癘疫이 크게 일어 사망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御醫 安景昌에게 명하여 편찬, 諺解를 붙여 이 해 가을 校書館에서 간행·반포한 것이다. 許浚의 「新纂辟瘟方」에 비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②⑬ 「痘瘡經驗方」 1卷(存), 朴震禧 撰; 仁祖~顯宗代에 찬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을 편찬한 것으로 독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당시에 편찬된 痘瘡治療書로는 가장 우수한 醫書로서 책의 末尾에 간단하지만 저자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②⑭ 「龍山療痘篇」(存), 李蕃 撰; 顯宗 13년(1672)에 편찬된 이 책은 여러 醫書의 痘方과 痘疹治療의 見聞을 종합하여 편찬한 醫書로서, 官吏로부터 鄉村居士에게까지 널리 이용되었다.

②⑮ 「白光玆知事公遺事附經驗方」 寫本 1冊(存), 白光玆 撰; 肅宗朝의 御醫였던 白光玆의 遺事 뒤에 있는 그의 經驗方 16條. 그는 鍼術이 뛰어났으며, 특히 鍼術로 종기를 수술하여 神醫의 이름이 있었다.

②⑯ 「經驗方」·「活人新方」, 朴英 撰; 中宗代.

②⑰ 「頤生錄」 1卷(抄本), 鄭惟仁 撰; 中宗代.

②⑱ 「衛生方」, 朴雲 撰; 中宗代.

②⑲ 「救荒切要」, 安瑋·洪胤昌 撰; 中宗 36년(1541).

③⑰ 「痘瘡易解方」, 柳之蕃·金允闇 撰; 中宗~明宗代.

③⑱ 「鄭北窓方」, 鄭礪 撰; 中宗~明宗代.

③⑲ 「治疱易驗」·「治疱方」, 著者未詳. 앞의 것은 宣祖 18년(1585)에 간행된 攷事撮要의 8道冊板目錄에 보이고, 뒤의 것은 「東醫寶鑑」의 引用書임.

③⑳ 「醫學辨症指南」, 「柳成龍 撰」; 宣祖 33년(1600) 「醫學入門」의 鍼灸篇을 알기 쉽게 편집한 것임.

18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185 參照.

185) 三木榮, 「朝鮮醫書誌」, pp. 109-110;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p. 204-205 參照.

③④ 「纂圖方論脈訣集成」 高陽生(六朝) 編輯·許浚 校正; 宣祖 14년(1581) 許浚이 대대적으로 校正하여 刊行함.

③⑤ 「二養編」 上下2篇 9卷, 曹卓 撰; 下編 3卷이 醫學編, 光海君 10년(1618) 경.

③⑥ 「壽養叢書類輯」 2卷, 李昌庭 撰; 이 책은 攝生·養生·藥物·救急單方 등을 기술한 것임. 光海君 12년(1620).

③⑦ 「舟村新方」, 申旻 撰; 肅宗 13년(1687) 寫本으로 전하다가 鉛活字本으로 간행됨.

③⑧ 「古今經驗活約方」 1卷, 柳瑞(相) 撰; 痘方의 寫本으로, 前述한 朴震禧의 「痘瘡經驗方」을 祖述한 것임.

③⑨ 「醫門寶鑑」 8卷, 周命新 撰·李命錫 校正; 景宗 4년(1724)에 편찬된 이 책은 「東醫寶鑑」을 祖述한 것으로, 1918년 李命錫이 校正하여 간행함.

이 외에 書名과 일부 저자만이 전하고 있는 「惡病(疾)治療方」, 「河中樞方」, 「普救錄」, 「養生大要」, 「養生說」(許守谷撰), 「中朝質問方」, 「中朝傳習方」, 「諸疝治方」, 「聞見方」, 「三意一驗方」, 「三方」(宋時烈編), 「簡三新編」, 「三方撮要」(桂山房編), 「經驗方彙編」, 「李國美方」, 「全方」, 「尹方」, 「白醫方」, 「吳方」, 「文生方」, 「智異山僧方」, 「醫方」(昌成君必撰), 「丹谷經驗方」(李鎮泰 撰) 등 많은 醫書와 醫方이 편찬되어 朝鮮時代 醫學을 발달시키는 한편 대중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였다. 朝鮮中期 이후는 明醫學이 성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의학 발달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2) 外國醫書

외국의서라 함은 주로 中國醫書を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古代로부터 中國과 다방면에 걸쳐 끊임없이 교류하여 왔다. 그중에서도 醫學은 계속되는 중국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醫書·藥材·醫員의 교류가 많았다. 특히 醫書는 우리나라에 전래한 이후 계속 覆刊되어 醫生敎育과 民疾의 치료에 활용되었다. 本節에서는 太宗~景宗代에 간행된 中國醫書を 書名·著者·刊行年代·備考의 순으로 列舉하기로 하겠다.¹⁸⁶⁾

〈表 8〉

書 名	著 者	刊 行 年 代	備 考
「鍼灸銅人圖」	2軸	太宗 15(1415)	鏤板
「疑獄集」	3卷	(普) 和凝·和嶠	洪州刊行
「世醫得効方」	20卷	(元) 危亦林	春州府行
「直指方」	26卷	(宋) 楊士瀛	鑄字所刊(50件)
「醫方集成」		(元) 孫允賢	鑄字所刊(50件)
「傷寒類書」	未詳		鑄字所刊(50件)
「補註銅人經」	5卷	(宋) 王惟一	慶尚道刊
「永類鈴方」	22卷	(元) 李仲南	晉州府刊

186) 中國醫書の 刊行에 대하여는 「朝鮮王朝實錄」, 宣祖初에 간행된 「攷事撮要」의 「八道冊板目錄」, 金斗鍾의 「韓國醫學史」, 三木榮의 「朝鮮醫書誌」를 참고하였으며, 脚註는 省略하고, 初刊本만 기재하였다.

「三元參贊延壽書」	5卷	(元)李鵬飛	世宗 20 (1438)	全州府刊
「新註無冤錄」	2卷	(元)王與 (朝鮮) 崔致雲等 註解	世宗 22 (1440)	原州府刊
「太平聖惠方」	100卷	(宋)王懷隱	端宗 3년 구입	(鮮初?)
「纂圖方論脈訣集成」	4卷	(六朝)高陽生	"	鮮初
「和劑指南」	3卷	未詳	鮮初(世宗代?)	醫學取才必讀書
「濟生方」	10卷	(宋)嚴用和	世宗 12 (1430)	詳定所取才科目
「經史證類大觀本草」	31卷	(宋)唐慎微	鮮初	
「拯急遺方」		(明)葉尹賢	端宗元年 (1453)	
「和劑方」	10卷	(宋)許洪 註	"	
「加減十三方」	1卷	(明)葉尹賢	世祖2 (1456) 이전	所在各邑印刷
「服藥須知」	1卷	(宋)溫大明	"	"
「傷寒指掌圖」	3卷	(元)吳恕	"	"
「衍義本草」	20卷	(宋)寇宗奭	"	"
「神應經(附八穴灸法)」	1卷	(明)劉瑾	成宗 5 (1474)	
「周府袖珍方」	4卷	(明)李恒	成宗 13 (1482)	
「救急易方」	1卷	(明)趙季敷	成宗 15 (1484)	平壤府刊
「東垣十書」	16卷	(元)李杲等 撰	成宗 19 (1488)	
「資生經」	7卷	(宋)王執中	朝鮮前期	
「李東垣用藥眞珠囊」	1卷	(元)李杲	"	
「乾坤生意」	2卷	(明)朱權	"	
「乾坤生意祕輿」	1卷	"	"	
「醫學正傳」	8卷	(明)虞搏	"	甲辰字本
「經驗濟生良方」	11卷	(明)陳士賢	"	
「黃帝素問」	18卷	未詳	"	乙亥字本
「醫眼方」	1卷	(明)顧鼎臣	中宗 35 (1540)	慶州府刊
「臞仙活人心法」	3卷	(明)朱權	中宗 36 (1541)	
「直指方論醫脈眞經」	1卷	(宋)楊士瀛	中宗 38 (1543)	
「黃帝內經靈樞集註」	12卷	(宋)田經 校正	(中宗代?)	乙亥字本
「醫方集略」	7卷	(明)郭鑑	"	"
「外科精要」	3卷	(宋)陳自明	"	"
「新刊惠民御藥院方」	24卷	未詳	(燕山君~中宗代)	"
「新編婦人大全良方」	24卷	(宋)陳自明	(中宗~明宗代)	甲辰字本
「御藥院方」	11卷	(元)許國禎	"	"
「脈訣理玄必要」	1卷	(宋)劉開	明宗 2 (1547) 경	
「新刊通眞子補註 王」		(宋)劉元賓	1522 (中宗 17) ~	
「叔和脈訣」	3卷		1619 (光海君11) 경	
「東垣處方用藥指掌珍」		(元)李杲	明宗 2 (1547) 경	

「珠囊」	2卷				
「醫說」	10卷	(宋) 張杲	明宗 15(1560)	甲辰字本	
本草發揮	3卷	(明) 徐彥紀	明宗 16(1561)	"	
玉機微義	50卷	(明) 徐用誠 撰 (明) 劉純續增	(明宗代)	"	
醫林類證集要	10卷	(明) 王璽		"	
新刊醫家必用	無卷數		(明) 孫應奎	(明宗代)	
乙亥字本					
素問入式運氣論奧	3卷	(宋) 劉溫舒		"	
此事難知	2卷	(元) 王好古	(明宗~宣祖代)	朝鮮梅南書屋 ¹⁸⁷⁾ 刊	
(東垣十書中)					
格致餘論	1卷	(元) 朱震亨	"	"	
(醫統正脈中)					
局方發揮	1卷	(元) 朱震亨	"	"	
(醫統正脈中)					
蘭室秘藏	3卷	(元) 李杲	"	"	
(醫統正脈中)					
內外傷辨惑論	3卷	(元) 李杲	"	"	
壽親養老書	1卷	(元) 鄒鉉	"		
外科精義	2卷	(元) 齊德之	"	朝鮮梅南書屋刊	
(東垣十書中)					
醫經溯洄集	1卷	(元) 王履	"	"	
(東垣十書中)					
壽親養老新書	4卷	(宋) 陳直	(明宗~宣祖初)		
脈經	10卷	(晉) 王叔和	宣祖 3(1575)		
山居四要	4卷	(元) 汪汝懋	宣祖初期	八道冊板	
五臟圖			"	"	
重修政和經史證類		(宋) 曹孝忠等	宣祖 10(1577)	乙亥字本	
備用本草	31卷				
丹溪先生醫書纂要	2卷	(明) 盧和	(朝鮮中期)	八道冊板	
脈語	2卷	(明) 吳崑	"		
明醫雜著	1卷	(明) 王綸	"	八道冊板	
續醫說	10卷	(明) 俞辨	"		
食物本草	2卷	(明) 盧和	"		
新編診脈須知	5卷	(明) 吳洪	"	八道冊板	

187) 朝鮮梅南書屋은 明宗~宣祖代에 있었던 民間의 書屋인듯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明의 梅南書屋에서 「東垣十書」를 간행할 때 版心에 넣은 것을 朝鮮에서 翻刻할 때 朝鮮梅南書屋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三木榮, 「朝鮮醫籍考」, pp. 201-202 參照.

十藥神書	2卷	(元) 葛乾孫	"	(醫籍訪古志)
診脈要訣	3卷	(明) 吳洪	"	八道冊板
軍中醫藥	1卷	(明) 王鳴鶴	(孝宗~顯宗代)	

이상 列舉한 71種의 太宗~景宗代의 醫書는 刊行年代가 분명하거나,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 世宗~成宗代에 제정된 詳定所 取才科目과 醫員의 科擧·取才 또는 鍼灸醫 取才科目, 醫員必讀書 등으로 정해진 醫書도—— 그 중 일부는 간행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朝鮮前期에 간행된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醫學에 至大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世宗·世祖·成宗 등이 醫員·醫生의 教育과 治療을 위해 이들 指定醫書를 인쇄·간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정해진 醫書를 보면 아래와 같다(國內에서 편찬된 의서는 제외하였음).

① 詳定所制定 取才科目(世宗 12年 3月): 「直指脈」·「纂圖脈」·「直指方」·「和劑方」·「傷寒類書」·「和劑指南」·「醫方集成」·「御藥院方」·「濟生方」·「濟生拔粹方」·「雙鍾處士活人書」·「衍義本草」·「針灸經」·「補註銅人經」·「難經」·「素問括」·「聖濟總錄」·「危氏得効方」·「寶氏全嬰」·「婦人大全」·「瑞竹堂方」·「百一選方」·「千金翼方」·「牛馬醫方」 등 24種¹⁸⁸⁾

② 禮曹指定 醫員取才 所講醫書(世祖 10年 正月): 「銅人經」, 「小兒藥證直訣」, 「張子和方」, 「大全本草」, 「婦人大全」 등 5種.¹⁸⁹⁾

③ 四孟朔 取才科目(成宗 3年 3月): 「本草」, 「十四經發揮」 등 2種.¹⁹⁰⁾

④ 針灸醫 取才科目(成宗 3年 3月): 「針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針經摘英集」 등 4種.¹⁹¹⁾

등 모두 35種의 醫書도 조선전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鮮初부터 景宗代까지 國內에서 간행된 中國醫書는 모두 106種으로서 이들 醫書는 國內에서 撰述·刊行된 醫書와 함께 朝鮮時代 醫學發達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VI. 結 言

이상으로 朝鮮中期의 醫療制度和 醫學의 對外交流 및 醫書의 編纂·刊行 등을 살펴 보았다. 먼저 醫女는 太宗朝에 創設된 이후 世宗代를 거치면서 지방에까지 확대되어 醫療人으로서의

188) 「世宗實錄」, 卷47 12年 3月 戊午條.

189) 「世祖實錄」, 卷32 10年 正月 乙卯條. 이때 지정된 醫書는 모두 12종이나, 國內의서인 「瘡疹集」과 「產書」 및 朝鮮前期에 간행되거나 世宗 때의 詳定所 指定醫書와 중복되는 「黃帝素問」, 「傷寒類書」, 「直指方」, 「外科精要」, 「脈經」 등 7종은 제외하였음.

190) 「成宗實錄」, 卷16 3年 3月 庚戌條, 이때 지정된 의서는 모두 12종이나 國內의서인 「胎產集要」와 「瘡疹集」, 朝鮮前期에 간행되거나, 世宗 때의 詳定所 指定醫書 및 世祖 때의 科目과 중복되는 「纂圖脈」, 「直指方」, 「救急方」, 「婦人大全」, 「得効方」, 「銅人經」, 「和劑方」, 「資生經」 등 10종은 제외하였음.

191) 「成宗實錄」, 同上條, 이때 지정된 의서는 모두 11종이나 이 4종을 제외한 「纂圖脈」, 「和劑指南」, 「銅人經」, 「直指脈」, 「資生經」, 「外科精要」, 「十四經發揮」 등 11종은 모두 중복되는 것이므로 제외하였음.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였으나, 燕山君 이후 妓女와 함께 酒宴에 참석하게 되어 사회적 지위도 格下되었음은 물론 女醫로서의 責務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中宗 이후 酒宴의 참석을 嚴禁함으로써 그 기능이 점차 회복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점차 多樣化(罪人の 搜捕·妓女教育·儀仗隊 등)하였다.

治腫廳은 설치되었다가 뒤에 典醫監에 合屬되었으나, 이것의 설치는 朝鮮時代의 針灸學 내지 外科學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뒤에 廢置되었지만, 조선의 의학발달과 民疾의 치료에 공헌하였던 것이다. 조선중기의 醫療制度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燕山君代에 설치되었던 司活의 존재는 民疾의 치료라는 측면에서 특이한 것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醫官의 試取에 있어서는, 그 선발방법과 人員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科目은 醫員의 科擧·取才 및 針灸醫 取才 등 모두가 중국의서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중기 이후 발달한 明醫學의 영향이었다.

朝鮮前期에 크게 발달하여 우리나라 醫學의 自主的 發展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韓醫學은 燕山君 이후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壬辰·丙子の 兩亂을 거치는 동안 더욱 침체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許浚의 「東醫寶鑑」과 같은 不朽의 名著가 출현하였다. 明醫學의 성행은 韓國醫學, 특히 鄉藥의 발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지만 歷代 君主와 醫學者들의 꾸준한 노력은 이를 한국의학 발달에 잘 活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의학을 더욱 발전시켰던 것이다.

醫員·醫書·藥品의 對外交流는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중국과는 古代로부터 朝鮮後期까지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그중에서도 醫書의 수입은 우리나라 의학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醫學의 學問的 發達과 技術的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의서의 편찬에 引用됨으로써 醫學의 普及에도 공헌하였던 것이다. 藥品의 경우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약재는 물론 中央아시아와 南方產 藥材를 공급함으로써 약재의 보급과 재배 및 약품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醫員의 교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日本의 경우는 중국과 반대되는 것이 많았다. 즉 醫書(國內外)는 下賜·購入 또는 약탈 등의 방법으로 日本에 많이 건너갔으며, 약재도 처음에는 現物로, 후기에는 종자를 가져다가 栽培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원을 초빙해 가기도 하였다.

끝으로 醫書의 編纂과 간행을 보면, 조선시대 대표적 의서인 「東醫寶鑑」을 비롯하여 40餘種이 편찬·언역·간행되어 의학의 學問的 成果를 이룩하였으며, 中國醫書의 刊行(覆刊)도 매우 활발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에 100여종이 刊行되어 의술보급과 민질치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朝鮮中期는 醫療制度에는 큰 變化가 없었으나, 전기에 발달한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서의 편찬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학의 命脈을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